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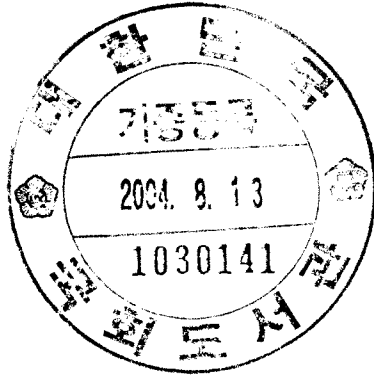
행정간행물 등록 번호
11-152000-000100-14

해양수산부 직제관련 규정

2004. 3. 22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목 차

1. 정부조직법	1
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3
3.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1
4.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183
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7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기본운영규정	223
7.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239
8. 계약직공무원규정	247
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61
1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273
1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정원에관한통칙	279
12. 국가공무원총정원령	297
13.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정원대장	301
14. 해양수산부 기구표	329

정 부 조 직 법

여 백

정 부 조 직 법

제정 1948. 7.17 법률 제 1호
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개정 1999. 1.21 법률 제5680호
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개정 1999. 5.24 법률 제5982호
개정 2000. 1.12 법률 제6139호
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
개정 2002. 1.19 법률 제6622호
개정 2004. 3.11 법률 제718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行政事務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國家行政機關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의 大綱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 ①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部·處 및 廳으로 한다.<개정 1999.5.24>

③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 外交通商部の 通商交涉擔當補助機關은 本部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行政自治部の 행정개혁담당담당보조기관은 本部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개정 2004.3.1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課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⑤行政各部에는 長官이 특히 指示하는 사항에 관하여 長官과 次官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에는 그 機關의 長,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과 外交通商部 및 行政自治部

의 本部長 밑에 정책의 企劃, 計劃의 立案, 研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등을 통하여 그를 補佐하는 擔當官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課에 상당하는 擔當官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둘 수 있다.<개정 1999.5.24>

⑥ 각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의 職級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室長과 本部長은 1級, 局長과 部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の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次官補는 1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の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室長·局長 또는 部長은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位에 補職되는 一般職의 職級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이 경우 別定職國家公務員인 局長 및 部長은 각 中央行政機關마다 1人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⑦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交通商部의 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은 外務公務員으로, 法務部의 室長·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檢事로, 國防部의 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과 兵務廳의 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現役軍人으로, 教育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4.3.11>

⑧ 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中央行政機關별로 100分의 20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신설 1999.5.24>

⑨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중 室長·局長·部長 또는 課長の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室長·局長·部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第3條 (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① 中央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地方行政機關은 業務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統合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를 統合하여 수행할 수 있다.

第4條 (附屬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研究機關·教育訓練機關·文化機關·醫療機關·製造機關 및 諮問機關 등을 둘 수 있다.

第5條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委員會 등 合議制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第6條 (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①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 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託 또는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機關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 下級行政機關에 再委任할 수 있다.

②補助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行政機關으로서 그 事務를 수행한다.

③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 등 國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7條 (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①각 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②次官(外交通商部の 通商交涉事務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本部長) 또는 次長은 그 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 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각 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그 機關의 長, 次官 또는 次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所屬廳에 대하여는 重要政策樹立에 관하여 그 廳의 長을 직접 指揮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部·處의 長은 그 所管事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務總理에게 所管事務와 관련되는 다른 行政機關의 事務에 대한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第8條 (公務員의 定員등) ①각 行政機關에 配置할 公務員의 종류와 定員, 公務員配置의 기준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개정 2004.3.11>

②第1項의 경우에, 職務의 性質上 2개이상의 行政機關의 定員을 統合하여 管理함이 效率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을 統合하여 정할 수 있다.

第9條 (豫算措置와의 併行) 行政機關 또는 所屬機關을 設置하거나 公務員의 定員을 增員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상의 措置가 併行되어야 한다.

第10條 (政府委員) 國務調整室長과 部·處·廳의 處長·次官·廳長·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 次官補와 外交通商部·行政自治部の 本部長은 政府委員이 된다.<개정 1999.5.24, 2001.1.29>

第2章 大統領

第11條 (大統領의 行政監督權) ①大統領은 政府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모든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②大統領은 國務總理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12條 (國務會議) ①大統領은 國務會議 議長으로서 會議을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②議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議長인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③國務委員은 政務職으로 하며 議長에게 議案을 제출하고 國務會議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④國務會議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國務會議의 出席權 및 議案提出) ①國務調整室長·法制處長·國政弘報處長·國家報勳處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務員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개정 1999.5.24, 2001.1.29>

②第1項에 規定된 公務員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提出을 建議할 수 있다.

第14條 (大統領秘書室) ①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大統領秘書室을 둔다.

②大統領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第15條 (大統領警護室) ①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을 둔다.

②大統領警護室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6條 (國家情報院<개정 1999.1.21>)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保安 및 犯罪搜查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國家情報院을 둔다.<개정 1999.1.21>

②國家情報院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개정 1999.1.21>

第17條 삭제<1999.5.24>

第18條 (中小企業特別委員會<개정 2001.1.29>) ①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中小企業特別委員會를 둔다.

②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國務總理

第19條 (國務總理의 行政監督權) ①國務總理은 大統領의 命을 받아 各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②國務總理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제19조의2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第20條 (國務調整室) ①各 中央行政機關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改革에 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밑에 國務調整室을 둔다.

②國務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第21條 (國務總理秘書室) ①國務總理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秘書室을 둔다.

②國務總理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第22條 (國務總理의 職務代行) 國務總理가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의 順序로 그 職務를 대행하고, 國務總理 및 副總理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의 指命이 있는 경우에는 그 指命을 받은 國務委員이, 指命이 없는 경우에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 順序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1999.5.24>]

第23條 (企劃豫算處) ①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재정개혁

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2004.3.11>

②企劃豫算處에 長官 1인과 次官 1人を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 政務職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1999.5.24>]

第24條 (法制處) ①國務會議에 上程될 法令案·條約案과 總理令案 및 部令案의 審査와 기타 法制에 관한 事務를 專門적으로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法制處를 둔다.

②法制處에 處長 1인과 次長 1人を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04.3.11>

第24條의2 (國政弘報處) ①國政에 대한 國內外 弘報 및 政府내 弘報業務調整, 國政에 대한 輿論收斂 및 政府發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政弘報處를 둔다.

②國政弘報處에 處長 1인과 次長 1人を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본조신설 1999.5.24]

第25條 (國家報勳處) ①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개정 2004.3.11>

②國家報勳處에 處長 1인과 次長 1人を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04.3.11>

第4章 行政各部

第26條 (行政各部) ①大統領의 統轄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개정 2001.1.29>

財政經濟部

教育人的資源部

統 一 部
外交通商部
法 務 部
國 防 部
行政自治部
科學技術部
文化觀光部
農 林 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 境 部
勞 動 部
女 性 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②行政各部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 政務職으로 한다.

③長官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第27條 (財政經濟部) ①財政經濟部長官은 經濟政策의 수립·總括·조정, 貨幣·金融·國庫·政府會計·內國稅制·關稅·外國換·經濟協力 및 國有財產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개정 1999.5.24, 2001.1.29>

②財政經濟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財政經濟部에 國際金融 및 經濟協力業務에 관하여 長官을 보좌하는 1급의 一般職國家公務員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④삭제<1999.5.24>

- ⑤內國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國稅廳을 둔다.
 - ⑥國稅廳에 廳長 1人和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⑦關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와 輸出入物品의 通關 및 密輸出入團束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關稅廳을 둔다.
 - ⑧關稅廳에 廳長 1人和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⑨政府가 행하는 物資(軍需品을 제외한다)의 購買·供給 및 管理에 관한 事務와 政府의 主要施設工事契約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調達廳을 둔다.
 - ⑩調達廳에 廳長 1人和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⑪統計의 基準設定과 人口調査 및 各種 統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統計廳을 둔다.
 - ⑫統計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제28조 (교육인적자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본조신설 2001.1.29]

[중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2001.1.29>]

第29條 (統一部) 統一部長官은 統一 및 南北對話·交流·協力에 관한 정책의 수립, 統一教育 기타 統一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중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01.1.29>]

第30條 (外交通商部) ①外交通商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通商交渉 및 通商交渉에 관한 總括·調整, 條約 기타 國際協定, 在外國民의 보호·지원, 國際事情調査 및 移民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外交通商부에 通商交渉事務를 담당하는 本部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

로 한다.

③外交通商부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④外交通商부에 儀典長 1人을 두되, 外務公務員으로 補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01.1.29>]

第31條 (法務部) ①法務部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檢事に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檢察廳을 둔다.

③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01.1.29>]

第32條 (國防部) ①國防部長官은 國防에 관련된 軍政 및 軍令과 기타 軍事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國防부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徵集·召集 기타 兵務行政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兵務廳을 둔다.

④兵務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01.1.29>]

第33條 (行政自治部) ①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公務員의 복무 및 연금관리,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管理, 행정개혁, 행정능률, 전자정부, 政府廳舍의 管理, 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개정 2004.3.11>

②國家의 行政事務로서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처리한다.

③行政自治부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④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⑤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⑥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신설 2004.3.11>

⑦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3.1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삭제<2001.1.29>]

第34條 (科學技術部) ①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技術協力 및 原子力과 기타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氣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소속하에 氣象廳을 둔다.

③氣象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35條 (文化觀光部) ①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영상·광고·출판·刊行物·體育·靑少年 및 觀光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개정 1999.5.24, 2000.1.12>

②文化觀光부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文化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소속하에 文化財廳을 둔다.<개정 19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2004.3.11>

第36條 (農林部) ①農林部長官은 食糧·農地·水利·畜産 및 農産物 流通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개정 1999.5.24>

②農林부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農村振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村振興廳을 둔다.

④農村振興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⑤山林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山林廳을 둔다.

⑥山林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37條 (産業資源部)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商業·貿易 및 貿易振興·工業·에너지 및 地下資源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産業資源부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中小企業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中小企業廳을 둔다.

④中小企業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⑤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관한 事務와 이에 대한 審査·審判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特許廳을 둔다.

⑥特許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38條 (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電波管理·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39條 (保健福祉部) ①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衛生·防疫·醫政·藥政·生活保護·自活支援·女性福祉·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老人·障礙人 및 社會保障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개정 2004.3.11>

②食品 및 醫藥品の 安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食品醫藥品安全廳을 둔다.<개정 1999.5.24>

③食品醫藥品安全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40條 (環境部)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의 보전과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41條 (勞動部) 勞動部長官은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職業訓練, 失業對策, 雇傭保險, 産業災害補償保險, 勤勞者의 福祉厚生, 勞使關係의 調整 기타 勞動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제42조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

신설 2001.1.29]<개정 2004.3.11>

[중전 42조는 제43조로 이동<2001.1.29>]

第43條 (建設交通部)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樹立·調整, 國土 및 水資源의 保全·利用 및 開發, 都市·道路 및 住宅의 建設, 海岸·河川 및 于拓, 陸運 및 航空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建設交通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鐵道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소속하에 鐵道廳을 둔다.

④鐵道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중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2001.1.29>]

第44條 (海洋水産部)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水産, 海運, 港灣, 海洋還境保全, 海洋調査, 海洋資源開發, 海洋科學技術研究·開發 및 海洋安全審判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개정 1999.2.5>

②海洋水産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③海洋에서의 警察 및 汚染防除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警察廳을 둔다.

④海洋警察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 및 次長은 警察公務員으로 補한다.<개정 1999.5.24>

[제43조에서 이동<2001.1.29>]

附則 <제5529호,19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第18項은 1998年 6月 14日부터, 同條 第29項 내지 第31項은 1998年 7月 1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附則 第7條第1項은 附則 同條同項에서 규정한 法律이 改正될 때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所管事務 및 公務員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事務는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각각 承繼한다.

財政經濟院長官의 所管事務중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務	財政經濟部長官
財政經濟部長官의 所管事務중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務	企劃豫算委員會

財政經濟院長官의 所管事務중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務	豫算廳長
統一院長官의 所管事務	統一院長官
總務處長官의 所管事務	行政自治部長官
科學技術處長官의 所管事務	科學技術部長官
公報處長官의 所管事務중 放送行政·出版·刊行物 및 海外弘報에 관한 事務	文化觀光部長官
外務部長官의 所管事務	外交通商部長官
內務部長官의 所管事務	行政自治部長官
文化體育部長官의 所管事務	文化觀光部長官
通商産業部長官의 所管事務중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務	産業資源部長官
通商産業部長官의 所管事務중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交渉에 관한 事務	外交通商部長官
保健福祉部長官의 所管事務중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務	食品醫藥品安全廳長

②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소속 公務員(政務職을 제외한다)은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行政機關소속 公務員으로 보며, 이 法에 의하여 廢止되는 行政機關소속 公務員으로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行政機關소속 公務員(政務職을 제외한다)은 大

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소속의 公務員으로 본다.

財政經濟院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外交通商部·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
統一院	統一部
總務處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自治部 또는 國務調整室
科學技術處	科學技術部

公報處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公報室
政務長官室	行政自治部
外務部	外交通商部
內務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自治部 또는 環境部
文化體育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靑少年保護委員會
通商産業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外交通商部 또는 中小企業廳
保健福祉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

③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表의 좌란에 기재된 事務와 관련된 總理令 또는 部令은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機關이 소속된 國務總理 또는 部的 長의 總理令이나 部令으로 본다.

第4條 삭제<2000.1.12>

第5條 내지 第7條 생략

附則 <제5680호,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제5809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4號 및 第4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후 1年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⑪생략

⑫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중 “海難審判”을 “海洋安全審判”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附則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일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일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所管事務 및 公務員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企劃豫算委員會 및 豫算廳長의 所管事務는 企劃豫算處長官이, 文化觀光部長官 및 公報室長의 所管事務중 第24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事務는 國政弘報處長이, 保健福祉部長官의 所管事務중 第3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事務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文化觀光部長官 및 文化財管理局長의 所管事務중 第3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事務는 文化財廳長이 이를 각각 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된 行政機關소속公務員(企劃豫算委員會 및 豫算廳의 政務職을 제외한다)은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行政機關소속公務員으로 본다.

企劃豫算委員會 및 豫算廳	企劃豫算處
公報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務總理秘書室 또는 國政弘報處
財政經濟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産業資源部 또는 金融監督委員會
統一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部 또는 民主平和統一諮問會
行政自治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自治部 또는 中央人事委員會
文化觀光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國政弘報處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廳
保健福祉部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

③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 承繼되는 豫算廳長의 所管事務에 관한 財政經濟部令과 文化觀光部長官의 所屬事務 중 國政弘報處長에게 承繼되는 事務에 관한 文化觀光部令은 이를 각각 總理令으로 보고, 附則 第3條第28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正되는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에 의한 農林部令은 이를 環境部令으로 본다.

第3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방송법) <제6139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되, 附則第4條 第2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부칙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각각 승계하고, 교육부 소속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여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계하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교육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보고,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國務委員은"을 "國務委員은 政務職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그 배치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① ~ ⑨ 생략

⑩遊船및渡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제5조 생략

여 백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여 백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38호	
개정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0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8호	
개정 1999. 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62호	
개정 1999. 8.23	대통령령	제16541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개정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 2000. 3. 4	대통령령	제16,746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0. 6.27	대통령령	제16,865호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17,078호	
개정 2001. 3.27	대통령령	제17,165호	
개정 2001. 6.30	대통령령	제17,278호	
개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8호	
개정 2002. 6.25	대통령령	제17638호	
개정 2002.10. 2	대통령령	제17753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44호	
개정 2003. 4. 7	대통령령	제17958호	
개정 2003. 7.25	대통령령	제18059호	
개정 2003.12. 3	대통령령	제18150호	
개정 2004. 1.29	대통령령	제18254호	
개정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어업지도사무소를 둔다.<개정 1998.8.1, 1998.12.31, 2001.3.27, 2002.3.2, 2004.1.29>

②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③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개정 1999.8.23>

④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신설 2000.12.30>

제2장 해양수산부

제3조 (직무) 해양수산부는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공유수면의 관리·매립, 연안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1999.8.23>

제4조 (하부조직) ①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해양수산부의 행정혁신을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조직·행정제도·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제도의 개선·예산·행정관리·법제·투자심사·전산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전문개정 2004. 3.22>

③해양수산부에 총무과·해양정책국·해운물류국·항만국·수산정책국 및 어업자원국을 둔다.<개정 1999.5.24>

④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안전관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9.5.24, 2000.6.27>

제5조 (차관보)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7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삭제<1999.5.24>

제9조 (안전관리관) ①안전관리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수로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안전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99.8.23 2000.6.27>

1. 해양안전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해상교통·안전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양안전종합대책의 수립
4. 사업장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5.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관한 사항
6. 선박등록제도의 연구·운영
7.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운영
8.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
9. 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운송에 관한 사항
10. 해사위험물검사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선박시설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2. 선박의 구조·설비기준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고속선 및 특수선박의 설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

14.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사항
16. 국적선박에 대한 승선점검에 관한 사항
17. 선박용물건의 예비검사 및 형식승인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관한 사항
18. 선박복원성기준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9. 선박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선박검사기술협회 및 정부대행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육성·지원
21. 어선안전대책의 총괄·조정
22. 어선의 건조허가에 관한 사항
23. 어선의 현대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해상재해예방대책 총괄
25. 해상재해대책관련 제도 운영
26. 해양오염방제제도에 관한 사항
27.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육성·지원
28.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2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30. 해상재해 및 해양오염손해배상보장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31.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업무 총괄
32. 방치폐선처리업무 총괄
3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34.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에 의한 피해어선의 보조 및 지원
35. 해상재해 및 해양사고·오염사고 발생시 상황종합 및 종합상황실 운영
36.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7.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8. 항로표지시설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39. 해상무선표지통제소 및 해상무선표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0. 위성항법시스템(DGPS)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국제해사기구(IMO)업무등 해양안전관리·항로표지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5.24]

제9조의2 (국제협력관) ①국제협력관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관련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주재공무원의 업무관련 사항
3. 외국정보자료의 수집·전파에 관한 사항
4. 어업협정(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을 제외한다)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5. 어업협정(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을 제외한다)의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
6. 고래 등 희귀동식물 및 고도 회유성 어종에 관한 국제수산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산물수출입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수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2. 세계무역기구와의 수산분야협정이행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1.3.27>
14. 원양어업의 진흥 및 정책자금의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어장개발 및 합작투자에 관한 사항
16. 원양어업의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원양어업생산계획의 수립, 어업조정 및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18. 기타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 기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0.6.27]

제1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8.1, 2000.6.27>

1. 보안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보존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4. 3.22>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관리지침의 수립·총괄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10.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1. 주요투자사업계획의 종합심사·평가
12. 주요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13. 주요투자사업계획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4. 법령안의 심사
15. 행정심판업무
16. 소송사무의 총괄
17. 법규집의 편찬·발간
18.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20. 사무관리의 개선
21. 해양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2. 해양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23.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해양시설·장비의 보안·방호계획 수립
27.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④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 (해양정책국) ①국장은 이사관·수산이사관·환경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2003.7.25>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6.27>

1.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3. 해양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4.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5.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6. 해양조사·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7. 해양과학조사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해양조사의 기준제정 및 기술지도, 해양조사기술자 육성에 관한 사항
9. 해양자원·해양에너지의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개발
10. 국가간 공동해양조사와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
11. 해양과학기술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2. 삭제<1999.1.29>
13.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도·감독
14.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15.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6. 해양오염방지대책 총괄
17. 하천으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의 유입규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8. 해역별 수질기준의 설정
19. 연안역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0. 연안역관리의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2.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3. 해양수산분야 벤처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총괄

제13조 (해운물류국) ①국장은 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해운정책의 총괄·조정
2. 국제정기항로의 개발
3. 외항정기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운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적선수송정책의 수립·조정
6. 외항부정기운송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계획조선 계획의 수립·조정
9. 외항선박 수급 및 용선 허가에 관한 사항
10. 연안해운개발계획의 수립·조정
11. 내항여객 및 화물수송에 관한 사항
12. 내항선박의 수급계획 수립·조정
13. 내항해운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연안항로(남북한간 해상항로를 포함한다)의 개척·조정
15. 한국해운조합의 육성·지원
16. 해기사 및 선원의 수급계획
17. 해기사의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18. 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제도

19. 선원교육기관의 육성·지원
20. 외국인선원고용에 관한 사항
21. 선원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2. 선원노사분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3. 선원의 임금조정에 관한 사항
24.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25.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26. 선원의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7. 선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8. 선원의 외국취업에 관한 사항
29. 선박관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9의2. 항만물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 29의3. 항만물류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 29의4.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30. 항만화물유통체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항만물류종합정보처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31의2. 항만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32. 항만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3.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34. 부두운영회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5.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6. 항만근로자의 수급·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검수원·검량원 및 감정원의 수급 및 시험에 관한 사항
38. 항만의 보안·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
39. 항만합동민원실 및 항만관리법인의 육성·지원

- 40. 예선 및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1. 선박의 입·출항 및 개항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42. 도선사의 수급과 도선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43. 항만관제(VTS)에 관한 사항
- 44. 항만공사화의 추진등 항만의 관리·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 45. 해운·항만물류 관련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제14조 (항만국) ①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건설계획의 수립·조정·총괄
- 2. 항만물동량의 추정 및 항만시설수요의 산정
- 3. 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 4.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 5. 항만안의 친수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6. 항만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 7. 국토종합계획의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 8. 항만건설관련 배후단지 및 수송시설 계획의 수립·시행
- 9. 항만건설관련 어업 및 용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 10. 항만공사의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 11. 항만공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 12. 항만공사의 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 13. 항만공사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지도·감독
- 14. 신항만 및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15.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16.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

17. 항만시설 민자유치제도에 관한 사항
18. 항만시설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선정 및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19. 항만시설 민자유치사업자의 선정
20.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21.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22. 민자유치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3. 민자유치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24.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5. 항만기술연구기관의 육성·지원
26. 항만공사의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7. 항만공사설계자문위원회 및 비관리청항만공사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8.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항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및 항만공사에 관한 사항
30. 항만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1. 건설중인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2.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33. 하역장비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4. 하역장비의 현대화·자동화 및 신기술 도입
35. 비축함선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6. 항만건설업무와 관련한 전산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항만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3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육성·지원

[전문개정 1999.5.24]

제15조 삭제<1999.5.24>

제16조 (수산정책국) ①국장은 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2000.6.27, 2001.3.27>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2. 수산경제동향 종합·분석
3.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4.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정책자금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수산관련 기금의 조성·운용
7. 수산용 면세유류의 수급에 관한 사항
8. 수산분야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산회 및 대한어망공업협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1.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 도매시장·위판장·공판장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가격안정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4. 수산분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유통단지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17. 수산물가공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8.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19. 수산물가공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수산물가공품의 규격표준화에 관한 사항
21. 수산물품질인증등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2. 수산물가공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수산물가공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24. 수산물의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25. 내지 30. 삭제<2000.6.27>
31.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32. 중·장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33. 어촌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4. 어촌관광·휴양·특산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35. 어촌 및 연안해면의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36. 제1종 및 제3종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7. 제1종 및 제3종어항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8. 제1종 및 제3종어항시설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39. 제2종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협의
40. 수산시설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어항구역안의 권리설정 및 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42. 어항협회의 육성·지원
43. 제1종 및 제3종어항의 조사와 어항시설계획의 수립·조정
44. 제1종 및 제3종어항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45. 어항구역안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46. 제2종어항의 시설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47. 제1종 및 제3종어항시설공사의 설계지침 및 시공지도에 관한 사항
48. 제1종 및 제3종어항시설공사의 품질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9. 어항정책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0. 제2종어항시설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1. 제1종 및 제3종어항시설 및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52. 어항건설관련 어업피해 및 용지의 보상
53. 육지 소규모항의 개발에 관한 사항
54. 수산시설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5. 수산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평가
56. 수산기술지도용 자료의 개발 및 교재의 제작·관리
57. 수산기술정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보급
58.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9. 수산기술지도장비 및 기술지도선의 수급·조정
60. 수산기술지도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61. 수산특정연구사업 및 수산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62. 어업인후계자·전업어업인 및 선도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63.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4. 어가부업의 개발·장려에 관한 사항
65. 저소득 어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6. 수산공제업무에 관한 사항
67. 어업인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68. 어촌복지시설의 보급에 관한 사항
69. 서해 5도 공동운반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
70. 전국어업인후계자연합회의 육성·지원
71. 어업생산통계조사의 기획 및 총괄 <신설 2002.12.30>

제17조 (어업자원국) ①국장은 이사관·수산이사관·선박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6.27, 2003.7.25>

② 삭제<2000.6.2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6.27>

1. 수산물생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연근해어업진흥정책의 종합·조정 에 관한 사항
3. 연근해어업제도의 조정·운영 에 관한 사항
4. 연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에 관한 사항
6.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연근해어획물운반업의 허가 에 관한 사항
8.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 에 관한 사항
9.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개발·운영 에 관한 사항
10. 육성수면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12. 수산시험·연구계획의 조정·평가 에 관한 사항
13.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에 관한 사항
14. 연근해어선의 수급계획 에 관한 사항
15. 연근해어업 자원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 에 관한 사항
16. 어업생산 통계 자료관리 및 통계시스템 운영
17.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쿼터 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인접 연안국과의 어업조정 에 관한 사항
20.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에 관한 사항
21.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2.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의 수행 에 관한 사항
23.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24. 어업지도선 수급계획의 수립
25. 수산통신시설계획의 수립·운영관리
26. 어업무선국의 통제·지도

27.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에 대한 조사·처리
28. 어업지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2004.1.29>
29. 낚시어선업제도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0. 양식사업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31.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2. 패류·해조류 기타 양식어업의 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33. 어장정화·정비 및 적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4. 어장수질등 환경기준 및 위생기준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35.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6.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37. 수산자원조성종합계획의 수립
38.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39. 수산종묘의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40.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41. 바다목장화사업에 관한 사항
42. 국토이용계획의 수산부문에 관한 사항
43. 수산자원보전지역 및 보호수면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4.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45. 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6.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운영과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
47. 내지 55. 삭제<2000.6.27>

④ 삭제<2000.6.27>

[전문개정 1999.5.24]

제18조 (위임규정) 해양수산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은 36개 과(담당관)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2002.10.2, 2004.1.29>

제3장 국립수산과학원

제19조 (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이 장에서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8.12.31, 2002.3.2>

제20조 (원장) 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2.28, 2002.3.2>

제21조 (하부조직) ①과학원에 연구기획실·어업자원부·양식과학부·해양환경부 및 연수부를 둔다.<개정 1998.12.31, 1999.5.24, 2002.3.2, 2004.1.29>

②원장밑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 및 연구기획실·어업자원부·양식과학부·해양환경부·연수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1999.5.24, 2002.3.2, 2004.1.29>

제21조의2(연구기획실) ①연구기획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2. 시험·연구계획의 수립
3. 예산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국내외 수산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산연구의 경제성분석에 관한 사항
6. 조직·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무관리·법령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시험조사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의 정보화추진 및 전산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험·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수산기술의 연구성과 보급 및 홍보

11.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산분야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13. 어업인 정보화교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1.29]

제22조 (어업자원부) ①어업자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어업자원부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6.27, 2002.3.2>

1. 연근해 수산자원 및 국제공동이용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개정 2004.1.29>
2. 배타적경제수역안의 어업자원의 평가 및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
3. 어황변동에 관한 조사·연구
4. 어업협정과 관련된 어업자원 연구
5. 어업자원관리기술의 개발
6. 연안국 어업자원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7. 고도회유성 어업자원 연구
8. 삭제 <2004.1.29>
9. 해외어업자원의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10. 어장개발을 위한 어업자원 조사
11. 해외어업에 관한 자료수집·분석
1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의 개발·연구
13. 조업자동화 어업기술의 개발·연구
14. 환경친화적 어업기술의 개발·연구
15. 어업자원생산·조성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연구
16. 삭제 <2004.1.29>
17.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수산공학연구 및 시설개발

18. 수리모형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심해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20. 인접국과의 어업협력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21. 얕은 바다의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22. 어구 등 수중시설물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 제23조 (양식과학부) ①양식과학부에 부장 1인을 두되, 양식과학부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1.29>
-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2>
1. 수산자원의 증·양식 기초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2. 양식생물의 생리에 관한 연구
 3. 삭제<2004.1.29>
 4. 삭제<2004.1.29>
 5. 삭제<2004.1.29>
 6. 양식생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제 개발에 관한 연구
 7. 양식생물의 약리학적 시험·연구
 8. 양식생물의 병원생물에 관한 생리·생태학적 연구
 9. 양식생물의 질병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개발
 10.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11. 수산물의 위생기준 설정·관리에 관한 연구
 12. 수산제품의 독성 및 미생물학적 시험·연구
 13. 수산물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개정 2004.1.29>
 14. 수산물의 증·양식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15. 호르몬 분석 등 증·양식 연구업무의 지원<신설 2004.1.29>
 16.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이식 또는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업무<신설 2004.1.29>

제24조 (해양환경부) ①해양환경부에 부장 1인을 두되, 해양환경부장은 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2002.3.2, 2003.7.25>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2002.3.2>

1.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
2. 해양환경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3. 어장환경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4. 어장환경 회복 및 개선기술에 관한 연구
5. 해양환경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개정 2004.1.29>
6. 해수·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의 오염에 관한 연구<개정 2004.1.29>
7. 해양환경관리기술 및 수질오염에 관한 연구
8. 해양변동의 원인 및 구조에 관한 연구
9. 부유생물에 관한 조사·연구
10. 해양의 해수특성 및 물질순환 연구
11. 이상해양상태에 관한 연구
12. 한국해양자료센터의 운영
13. 해양원격탐사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
14.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유해생물의 변동에 관한 연구<개정 2004.1.29>
- 14의2. 유해물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개정 2004.1.29>
15. 유해생물의 분류와 생리·생태 연구
16. 해양생물의 독성과 오염생물에 관한 연구
17. 적조의 장단기 예보
18. 적조원격탐사기술의 개발 및 적조관련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19. 해양환경 수용용량의 산정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20. 국가 해양환경자료의 정밀도 및 정확도 관리에 관한 연구<신설 2004.1.29>

21. 수산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4.1.29>

제24조의 2 (연수부) ①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본조신설 1998.12.31]

제25조 (수산연구소) ①연근해에 있어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원장소속하에 수산연구소를 둔다.<개정 2002.3.2>

②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장은 수산이사관·수산부이사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제주수산연구소장은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1.29>

③소장은 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수산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25조의2(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①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둔다.

②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어초사업의 적지조사·사후관리 및 효과조사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관련 연구·기술개발
3. 종묘방류의 방류어종·시기·장소·물량 및 기법에 관한 연구

4. 종묘방류사업 및 해중림조성사업의 효과조사에 관한 연구
5. 수산자원조성사업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평가기법개발·보급
- ④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6조 (내수면연구소) ①내수면에 있어서의 수산시험·연구사업을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내수면연구소를 둔다.<개정 2002.3.2, 2004.1.29>

- ②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소장은 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내수면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전문연구소) ①양식환경과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양식환경연구소 및 고래연구센터를 둔다.

- ②양식환경연구소 및 고래연구센터에 각각 소장 및 센터장 1인을 두되, 소장 및 센터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소장 및 센터장은 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양식환경연구소 및 고래연구센터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개정 2004.1.29>

제27조 (연구센터) ①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하에 연구센터를 둔다.<개정 1999.5.24, 2004.1.29>

- ②연구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1.29>
- ③연구센터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2002.3.2, 2004.1.29>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8조 (직무등)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이 장에서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6.27>

1. 해양조사 및 관측자료 수집·분석·평가
2. 해양기상조사 및 조석·조류의 추산 및 예보
3. 수로측량 및 해도제작
4. 항해안전자료 수집·분석 및 평가
5. 수로도서지의 편찬·간행
6. 해양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4.1.29>

제29조 (원장) ①조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수로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수로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 (하부조직) 조사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해양조사사무소) ①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하에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수로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수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사무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개정 2001.3.27>

제32조 (직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이 장에서 “품질검사원”이라 한

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3.27>

1. 수산물의 품질인증·표준출하규격 등 품질관리
2.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수출가공시설 등 위생관리
3. 수산물의 검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제33조 (원장) ①품질검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수산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수산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②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1.3.27>

제34조 (하부조직) 품질검사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7>

제35조 (지원) ①품질검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개정 2001.3.27>

②지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③지원장은 품질검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1.3.27>

④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7>

제6장 (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1998.12.31>

제7장 어업지도사무소

제39조 (직무) 어업지도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4.1.29>

1.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2. 어업의 지도·단속
3. 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관련 통신운용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제39조의2(명칭 등) 어업지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40조 (소장) ①어업지도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1.29>

②소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 (하부조직) 어업지도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8장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1998.8.1>

제9장 지방해양수산청

제44조 (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9.5.24>

1.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선원근로감독등 선원관련 업무
3. 항만운영 및 연안역관리
4. 전산기기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6. 어항공사·어항시설 유지·관리
7.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8. 어촌지도
9. 수산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 어업생산통계조사의 실시 <신설 2002.12.30>

제45조 (명칭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3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46조 (지방해양수산청장) ①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수산이사관·환경이사관·선박이사관·수로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수산이사관·환경이사관·선박이사관·수로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마산 및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동해·군산·목포·포항·제주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환경서기관·선박서기관·수로서기관·시설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2003.7.25>

제47조 (하부조직)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87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2000.12.30, 2003.7.25>

제48조 (건설사무소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소속하에 건설사무소(부산·인천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감문관리소(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해양수산사무소·해상무선표지통제소(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해상무선표지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위성항법중앙사무소(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및 항로표지종합관리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를 둔다.<개정 1999.5.24, 2000.12.30, 2003.7.25, 2004.1.29>

②건설사무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부산건설사무소장 및 인천건설사무

소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여수건설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5>

③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각종계약 및 예산집행
3. 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조정
6.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 감독
7. 항만시설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업무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안전관리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등

④건설사무소·감문관리소·해양수산사무소·해양무선표지통제소·해양무선표지소·위성항법중양사무소 및 항로표지종합관리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2003.7.25, 2004.1.29>

제9장의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신설 2000.12.30>

제48조의2(직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위치 및 관할구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8]

제10장 해양안전심판원

제49조 (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9.8.23>

제50조 (구성) ①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인과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8.23>

②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각 1인과 심판관 각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8.23>

제51조 (조사관) ①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선박이사관 또는 선박부이사관으로, 조사관은 선박부이사관 또는 선박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선박서기관으로, 조사관은 선박서기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9.8.23>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심판의 재결의 집행
4.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5.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6.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사항

제52조 (지휘·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3조 (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23>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54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공무원 2인(5급)과 어업생산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7급상당)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9.5.24, 개정 2002.12.30>

제5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12.30>

②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어업생산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인(7급상당 6인, 8급 2인, 8급상당 1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개정 2002.3.2, 개정 2002.12.30>

제56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의2제1항·제14조제1항·제20조·제24조제1항·제33조제1항·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협력관·항만국장·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신설 2000.2.28, 개정 2001.3.27, 2002.3.2, 2002.10.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4 및 별표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90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8, 행정서기 9, 별정직 7급상당 26, 별정직 9급상당 4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1998년 7월 1일부터 통계청에 이체한다.

제5조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규정의 효력) 대통령령 제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이 영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8.8.1 대통령령 제15850호>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1 대통령령 제16028호>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6인(4급 1, 5급 1, 6급 3, 7급 12, 8급 23, 9급 14, 수산연구사 3,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5.24 대통령령 제1636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26인(2급 1, 3급 또는 4급 2, 4급 6, 4급 또는 5급 1, 7급 11, 8급 3, 9급 1, 어촌지도사 12, 기능직 8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4급 1인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③ (과 또는 담당관 수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항만공사화 추진등을 위하여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3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부 칙<1999.8.23 대통령령 제16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중 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1조(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중 제5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제16조(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중 제51조제1항·제55조제1항 및 별표 2(국립현대미술관장 및 국립국악원장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제29조(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

제의 개정)의 개정규정, 제30조(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중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제36조(비상기획위원회규정의 개정)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3.4 대통령령 제1674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2000.6.27 대통령령 제168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대통령령 제170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4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1.3.27 대통령령 제171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수산관계공무원여비의 지급대상란중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6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④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1.6.30 대통령령 제172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 대통령령 제175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국립수산진흥원 소속공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③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항 전단 및 제7항 후단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7조의2제3항 후단·제7항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⑤어장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⑥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진흥원장”을 “과학원장”으로 한다.

⑦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고, 제54조제2항 본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2.10.2 대통령령 제177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청에서 이체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되는 어업생산통계조사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전에 통계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 칙<2003. 7.25 대통령령 제180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선원노동위원회란 다음에 대산선원노동위원회란 및 평택선원노동위원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산선원노동위원회 평택선원노동위원회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
------------------------	---------------------

부 칙<2004. 1.29 대통령령 제182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학예연구사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7항 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제2호중 “분소장”을 “연구센터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관할수산기술관리소장”을 “관할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

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물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물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호중 “출장소”를 “해양수산물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물사무소”로 한다.

④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출장소”를 “해양수산물사무소”로 한다.

⑤선박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출장소”을 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수산물사무소“로 한다.

⑥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물사무소”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물사무소장”으로 한다.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물사무소장”으로 한다.

부 칙<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04.1.29>

수산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제25조제4항관련)

명 칭	위 치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서해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제주수산연구소	제주도 제주시

[별표 1의2]<신설 2004.1.29>

어업지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제39조2관련)

명 칭	위 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부산광역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별표 1의 3] <개정 2000.12.30, 2003. 7.25, 2004.1.29>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제45조관련)

명 칭	위 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여수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마산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동해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군산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목포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포항시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도 제주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별표2] <개정 2000.6.27, 2001.3.27, 2002.3.2, 2002.10.2, 2002.12.30, 2003.7.25,
2004.1.29>

해양수산부공무원정원표(제54조관련)

총 계	490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7
차관보(1급상당)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5급상당	1
6급상당	2
7급상당	1
9급상당	1
일반직 계	409
1급 내지 9급 소계	408
관리관	1
이사관 · 부이사관 · 별정직 2급상당 또는 별정직 3급상당	1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수로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환경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환경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 설부이사관 또는 수산연구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 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정보통신이사 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 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별정직 2급상당 또는 별정직 3급상당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 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산 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3급 또는 4급	9
3급 · 4급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3급 · 4급 또는 어촌지도관	1
4급	13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2
4급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5
4급 또는 수산연구관	3
4급 또는 어촌지도관	4

4급 또는 5급	33
4급·5급·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8
4급·5급 또는 수산연구관	5
4급·5급 또는 어촌지도관	2
5급	7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5급·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23
5급 또는 수산연구관	8
5급 또는 어촌지도관	22
6급	108
6급·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26
6급 또는 수산연구사	12
6급 또는 어촌지도사	21
7급	7
7급·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5
7급 또는 수산연구사	1
7급 또는 어촌지도사	3

연구직 소계	1
수산연구사	1
기능직 계	72
기능8급	1
기능9급	15
기능10급	56

[별표 3] <개정 2000.6.27, 2000.12.30, 2001.3.27, 2002.3.2, 2002.10.2, 2002.12.30, 2003.7.25
2004.1.29>

해양수산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5조관련)

총 계	3,487
별정직 계	36
해양안전심판원 중앙심판원장(1급상당)	1
해양안전심판원 지방심판원장(2급상당)	4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2급상당)	4
4급상당	8
7급상당	6
8급상당	13
일반직 계	2,113
1급 내지 9급 소계	1,816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환경이사관 · 선박이사관 · 수로이사관 · 시설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환경이사관 · 선박이사관 · 수로이사관 · 시설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환경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부이사관 또는 수산부이사관	1
이사관 · 수로이사관 · 부이사관 또는 수로부이사관	1
수산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또는 수산연구관	3
선박이사관 또는 선박부이사관	1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2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환경부이사관 · 선박 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시설 부이사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3급 또는 4급	3
4급	29
4급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4급 또는 수산연구관	3
4급 또는 어촌지도관	11
4급 또는 5급	17
4급 · 5급 또는 어촌지도관	2
5급	18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4
5급 또는 수산연구관	1
5급 또는 어촌지도관	39
6급	52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3
6급 · 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
6급 또는 어촌지도사	104
7급	453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7급·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5
7급 또는 어촌지도사	75
8급	265
8급 또는 어촌지도사	39
9급	17
연구직 소계	297
수산연구관	91
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5
수산연구사	193
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8
기능직 계	1,338
기능6급	186
기능7급	183
기능8급	211
기능9급	197
기능10급	561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99.5.24>

여 백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여 백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1998. 2.28	해양수산부령	제 49호	
개정	1998. 8. 1	해양수산부령	제 59호	
	1998.12.31	해양수산부령	제 77호	
	1999. 5.24	해양수산부령	제120호	
	1999. 8.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000. 7.14	해양수산부령	제171호	
	2000.12.30	해양수산부령	제182호	
	2001. 3.28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01. 8. 8	해양수산부령	제200호	
	2002. 3. 9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6.28	해양수산부령	제224호	
	2002.10. 2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2002.12.30	해양수산부령	제241호	
	2003. 7.25	해양수산부령	제252호	
	2003.12. 3	해양수산부령	제260호	
	2004. 2. 2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2004. 3.22	해양수산부령	제27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 삭제 <1999. 5.24>

제3조 (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 등록·심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 삭제 <1999.5.24>

제5조 (안전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안전관리관밑에 안전정책담당관·해사기술담당관·해양방재담당관 및 항로표지담당관을 둔다.<개정 2001.8.8>

②안전정책담당관 및 해사기술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수로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해양방재담당관 및 항로표지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수로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12.30, 2001.8.8, 2003.7.25, 2004.2.2>

③안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7.14, 2001.8.8>

1. 해양안전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해상 교통·안전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1.8.8>
4. 해양안전종합대책의 수립
5. 사업장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6.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관한 사항
 7. 선박등록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8.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운영
 9.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및 11. 삭제 <2002.10.2>
 12. 어선안전대책의 총괄·조정
 13. 국제해사기구(IMO)업무 등 해양안전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14.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15. 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운송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16. 해사위험물검사기관의 지도·감독<개정 2002.10.2>
 17.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해사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2001.8.8>
1. 선박시설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구조·설비기준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고속선 및 특수선박의 설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
 4.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1.8.8>
 6. 국적선박에 대한 승선점검에 관한 사항
 7. 선박용 물건의 예비검사 및 형식승인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관한 사항
 8. 선박복원성기준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9. 선박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2.10.2>
12. 삭제 <2000.7.14>
13. 어선의 현대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15.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16. 재해에 의한 피해 어선의 보조 및 지원
17.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18. 선급법인의 지도·감독<개정 2002.10.2>
19. 관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개정 2002.10.2>
- ⑤해양방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재해예방대책의 총괄
 2. 해상재해대책 관련제도의 운영
 3. 해양오염방제제도에 관한 사항
 4.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육성·지원
 5. 삭제 <2000.7.14>
 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 해상재해 및 해양오염 손해배상보장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8.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업무 총괄
 9. 방치폐선처리업무의 총괄
 10. 해적피해방지 등 선박보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11.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구축·운영<개정 2002.10.2>
 12. 해상재해 및 해양사고·오염사고 발생시 상황종합 및 종합상황실 운영
 13. ~ 15. 삭제 <2002.10.2>

⑥항로표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2002.3.9>

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3.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항로표지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지도·감독
5. 해상무선표지통제소 및 해상무선표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DGPS·NDGPS)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로표지기능의 측정에 관한 사항
9.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 및 현황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0.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11.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12.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3. 조류신호표지·기상신호표지·연안선박 통항신호소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사항
15.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변경·취소·고시 등에 관한 사항
16.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자에 대한 지도·감독
17.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등대박물관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전문개정 1999.5.24]

제5조의2(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무역진흥담당관 및 원양어업담당관을 둔다.

②국제협력담당관 및 원양어업담당관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무역진흥담당관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③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
2. 수산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개정 2002.3.9>
3. 외국주재 공무원의 업무 관련 사항
4. 외국정보자료의 수집·전파에 관한 사항
5. 어업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을 제외한다)
6. 어업협정의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을 제외한다)
7. 고래 등 희귀동식물 및 고도 회유성 어종에 관한 국제수산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④무역진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수산물수출입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와의 수산분야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1.3.28>

⑤원양어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원양어업진흥 및 정책자금의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외어장개발 및 합작투자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의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생산 계획의 수립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원양어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원양어업의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7.14]

제6조 (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혁신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8.8.1, 1999.5.24.>

②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다른 담당관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8.1, 1999.5.24, 2003.7.25>

③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프로세서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기관내 행정혁신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관리지침의 수립·총괄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국회 및 정당 관련업무를 포함한다)
5. 주요투자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주요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7. 주요투자사업계획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개정 2002.3.9>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사무관리의 개선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해양수산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업무의 총괄·지원

3. 해양수산분야 정보통신보안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관리
4. 해양수산분야 전자거래 관련업무의 총괄·지원
5. 해양수산분야 지리정보의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해양수산통계연보의 발간 및 관리

[전문개정 2004. 3.22]

제7조 (해양정책국에 두는 과) ①해양정책국에 해양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보전과 및 연안계획과를 둔다. <개정 1998.8.1, 1999.5.24>

②해양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해양개발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수로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수로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해양환경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환경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해양보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환경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연안계획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환경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8.1, 1999.5.24, 2000.12.30, 2001.3.28, 2003.7.25>

③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2000.7.14, 2001.8.8>

1.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3. 해양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5. 삭제 <2001.8.8>
 6.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7. 해양문화재단·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육성·지원
 8. 독도의 해양개발관련 업무 및 독도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9. 2010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
 10.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운영
 11.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총괄
 12. 해양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3. 해양법 관련업무의 총괄·조정(수산분야를 제외한다)<개정 2002.3.9>
 14. 해양수산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총괄<개정 2002.3.9>
 15.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개정 2002.3.9>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8>
1. 해양조사·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양조사의 기준제정 및 기술지도, 해양조사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해양자원·해양에너지의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개발
 5. 국가간 공동해양조사와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
 6. 해양과학기술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해양수산분야 벤처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 총괄
 8.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도·감독

⑤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1999.5.24>

1. 해양환경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해양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역별 수질기준의 설정
5.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육성·지원
6. 해역이용협약에 관한 사항

⑥해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8.1, 1999.5.24>

1. 해양폐기물처리대책의 수립·시행
2. 유류·유기물오염방지대책의 수립·시행
3. 갯벌 및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의 수립·시행
4.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시설 및 청소선의 관리
6. 해양환경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⑦연안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2001.8.8>

1. 연안역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연안역관리의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4.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업무의 총괄·조정
5.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연안정비사업 총괄

제8조 (해운물류국에 두는 과) ①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연안해운과·선원노정과·항만물류과 및 항만운영과를 둔다. <개정 1998.8.1, 1999.5.24, 2002.10.2, 2003.12. 3>

②항만물류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항만운영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2000.12.30, 2002.10.2, 2003.7.25, 2003.12. 3, 2004.2.2>

③해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2001.8.8>

1. 해운·물류정책의 총괄·조정
2. 국제정기항로의 개발
3. 외항정기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해운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적선수송정책의 수립·조정
6. 외항부정기운송사업의 육성
7.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계획조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외항선박의 수급 및 용선허가에 관한 사항
10. 해운물류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2>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1998.8.1>

⑤연안해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해운개발계획의 수립·조정
2. 내항 여객 및 화물수송에 관한 사항
3. 내항선박의 수급계획 수립·조정

4. 내항해운업의 육성
 5. 연안항로(남북한간 해상항로를 포함한다)의 개척·조정
 6. 한국해운조합의 육성·지원
- ⑥선원노동조합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기사 및 선원의 수급계획
2. 해기사의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제도
4. 선원교육기관의 육성·지원
5. 외국인선원고용에 관한 사항
6. 선원근로기준정책의 수립
7. 선원 노사분규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선원의 임금조정에 관한 사항
9.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10.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1. 선원의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2. 선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3. 선원의 해외취업에 관한 사항
14. 선박관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⑦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3>

1. 항만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항만물류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
4. 항만화물유통체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만공사화의 추진 등 항만의 관리·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6. 항만물류종합정보처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⑧항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2, 2003.12.3>

1. 항만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3. 항만합동민원실의 관리와 항만관리법인의 육성·지원

4. 예선 및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입·출항과 개항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선사의 수급과 도선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항만관제(VTS)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만의 보안·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

10. 부두운영회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12. 항만근로자의 수급 및 교육훈련과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검수원·검량원 및 감정원의 수급과 시험에 관한 사항

14. 항만물류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제9조 (항만국에 두는 과) ①항만국에 항만정책과·항만건설과·항만개발과·민자계획과 및 기술안전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2003.7.25>

③항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건설계획의 수립·조정·총괄
2. 항만물동량의 추정 및 항만시설수요의 산정
3. 항만정책심의회 운영 지원
4. 삭제 <2001.3.28>
5. 항만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6. 국토종합계획의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7. 항만건설관련 어업 및 용지의 보상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항만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육성·지원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항만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3.28>

1. 항만(신항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공사의 시공에 관한 지도·감독
2. 항만공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항만공사의 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4. 항만공사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지도·감독
5. 항만건설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의 집행
6.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임항지역유통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항만건설업무와 관련한 전산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항만안의 친수문화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⑤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항만 및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3.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신항만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지도·감독
5. 신항만공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6. 신항만공사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지도·감독
7. 신항만건설관련 배후단지 및 수송시설 계획의 수립·시행
8. 신항만건설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의 집행

⑥민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3.28>

1. 항만시설 민자유치제도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선정 및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3. 항만시설 민자유치사업자의 선정
4.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
5.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6. 민자유치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민자유치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8. 하역장비설치기본계획의 수립·조정
9. 하역장비의 현대화·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10.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사항

⑦기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3.28>

1.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연구기관의 육성·지원
3. 항만공사의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항만공사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및 항만공사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갑문시설·기계설비 및 함선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및 건설중인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0. ~ 12. 삭제 <2001.3.28>

[전문개정 1999.5.24]

제10조 삭제 <1999.5.24>

제11조 (수산정책국에 두는 과) ①수산정책국에 수산정책과·유통가공과·어촌어항과 및 수산경영과를 둔다. <개정 1999.5.24, 2000.7.14, 2004.2.2>

②수산정책과장 및 어촌어항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유통가공과장 및 수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 24, 2003.7.25, 2004.1.29>

③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8>

1. 수산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2. 수산경제동향 종합·분석
3.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4.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정책자금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수산관련 기금의 조성·운용

7. 수산용 면세유류의 수급에 관한 사항
8. 수산분야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산회 및 대한어망공업협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산행정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수산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2. 어촌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어가부업의 개발·장려에 관한 사항
14. 저소득 어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통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7.14, 2001.3.28
2001.8.8>

1. 수산물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도매시장·위판장·공판장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물가격안정대책의 수립·조정
5. 수산분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수산물유통단지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물가공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9.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가공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가공품의 규격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품질인증등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가공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지도·감독

15. 수산물가공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0.7.14>

⑥어촌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1.8.8>

1.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정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3. 삭제 <2001.8.8>

4. 어촌의 관광 및 휴양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5. 어촌 및 연안해면의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6.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국가어항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어항시설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어항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1. 국가어항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12. 지방어항의 시설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13. 지방어항시설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어항구역안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5. 어항건설관련 어업피해 및 용지의 보상

16. 어항구역안의 권리설정·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7. 한국어항협회의 육성·지원

18. 육지 소규모항의 개발에 관한 사항

19. 수산시설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⑦수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1.8.8>

1. 수산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평가

2. 수산기술지도용 자료의 개발 및 교재의 제작·관리

3. 수산기술정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보급

4.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산기술지도장비 및 기술지도선의 수급·조정

6. 수산기술지도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7. 수산특정연구사업 및 수산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8. 어업인후계자·전업어업인 및 선도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및 11. 삭제 <2001.8.8>

12. 수산공제업무에 관한 사항

13. 어업인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4. 어촌복지시설의 보급에 관한 사항

15. 서해 5도 공동운반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육성·지원<개정 2002.10.2>

17. 어업생산통계조사의 기획 및 총괄 <신설 2002.12.30>

제12조 (어업자원국에 두는 과) ①어업자원국에 어업정책과·어업교섭과·어업지도과·양식개발과 및 자원관리과를 둔다.<개정 2000.7.14, 2001.8.8 2001.1.29>

②어업정책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어업교섭과장 및 어업지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양식개발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환경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자원관리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8.8, 2003.7.25, 2004.2.2>

③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생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연근해어업진흥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근해어업제도의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연근해어획물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9. 육성수면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낚시어선업제도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02.3.9>
12. 수산시험·연구계획의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13.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4. 연근해어선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어업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2.2>

1.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2.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

3.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쿼터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접 연안국과의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6. 한·일 및 한·중 중간수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한·일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일본·중국 등 주변국가와 다자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간 민간어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⑤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2.2>

1.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2.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어업지도선 수급계획의 수립

5. 수산통신시설계획의 수립·운영관리

6. 어업무선국의 통제·지도

7.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에 대한 조사·처리

8. 어업지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⑥양식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8>

1. 양식사업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2. 양식수산물전염병예방에 관한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3. 수산용의약품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4.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역사무국(OIE)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패류·해조류 그 밖에 양식어업의 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8. 양식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장정화·정비 및 적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0. 어장정화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장수질 등 환경기준 및 위생기준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3. 국토이용계획의 수산부문에 관한 사항
14. 수산자원보전지역 및 보호수면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16. 양식어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⑦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8>

1. 연근해어업 자원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3. 어업생산 통계자료 관리 및 통계시스템 운영
4.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조성종합계획의 수립

7.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산종묘의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9.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0. 바다목장화사업에 관한 사항
 11. 내수면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 ⑦ 및 ⑧ 삭제 <2000.7.14>
- [전문개정 1999.5.24]

제3장 국립수산과학원의 과단위 기구<개정 2002.3.9>

- 제13조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과 및 단) ①국립수산과학원에 총무과 및 생명공학연구단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3.9, 2004.2.2>
- ②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생명공학연구단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2002.3.9, 2003.7.25, 2004.2.2>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회계·결산 및 용도<개정 2004. 2.2>
 3. 물품의 관리
 4. 주요업무계획
 5. 비상계획
 6. 국유재산의 관리
 7. 수산과학관의 운영·관리
 8. 기타 원내 다른 과·실·부 또는 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2.3.9, 2004.2.2>
- ④ 삭제<2004. 2.2>

⑤생명공학연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2.3.9>

1. 수산생물의 유전자원 탐색 및 보존·이용에 관한 연구
2. 양식생물의 유전공학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연구
3. 양식생물의 분자육종을 위한 기초연구
4. 수산생물의 유전체에 관한 연구
5. 해양생물의 신기능성 물질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제13조의2(연구기획실에 두는 과) ①연구기획실에 연구관리과 및 행정예산과를 둔다.

②연구관리과장은 수산연구관으로, 행정예산과장은 서기관·수산서기관·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2. 시험·연구계획의 수립
3. 시험·연구보고서의 발간
4. 국내외 수산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산연구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시험·연구사업의 정보화 추진 및 전산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산분야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8.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업인 정보화교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정감사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2. 정부업무평가 및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산연구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5. 예산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시험조사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산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보급 및 홍보(시험·연구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 2.2]

제14조 (어업자원부에 두는 팀) ① 어업자원부에 자원연구팀·해외자원팀 및 수산공학팀을 둔다.<개정 2002.3.9, 2004. 2.2>

② 각 팀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연근해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개정 2004.2.2>
2. 배타적경제수역안의 어업자원의 평가 및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
3. 어황변동에 관한 연구
4. 어업협정과 관련된 어업자원 연구
5. 어업자원관리기술의 개발
6. 심해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7. 인접국과의 어업협력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8. 얇은 바다의 수산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④해외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연안국어업자원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2. 고도 회유성 어업자원연구
3. 삭제 <2004. 2.2>
4. 해외어업자원의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5. 어장개발을 위한 어업자원 조사
6. 해외어업에 관한 자료수집·분석
7. 국제공동이용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⑤수산공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조업자동화 어업기술의 개발·연구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의 개발·연구
3. 환경친화적 어업기술의 개발·연구
4. 어업자원생산·조성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연구
5. 삭제 <2004. 2.2>
6.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수산공학 연구 및 시설개발
7. 수리모형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구 등 수중시설물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제15조 (양식과학부에 두는 팀) ①양식과학부에 양식관리팀·병리연구팀 및 식품위생팀을 둔다.<개정 2002.3.9, 2004. 2.2>

②각 팀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양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4. 2.2]

1. 수산물의 증·양식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2. 양식생물의 기초생리에 관한 연구
 3. 호르몬 분석 등 중·양식 연구업무의 지원
 4.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이식 또는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업무
- ④병리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양식생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제 개발에 관한 연구
2. 양식생물의 약리학적 시험·연구
3. 양식생물의 병원생물에 관한 생리·생태학적 연구
4. 양식생물의 질병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개발

⑤식품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2. 수산물의 위생기준 설정·관리에 관한 연구
3. 수산제품의 독성 및 미생물학적 시험·연구
4. 수산물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개정 2004.2.2>

제16조 (해양환경부에 두는 팀) ①해양환경부에 환경관리팀·해양연구팀 및 유해생물팀을 둔다.<개정 2002.3.9, 2004.2.2>

②각 팀장은 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2004. 2.2>

③환경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 2.2>

1.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개정 2002.3.9>
2. 해양환경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3. 삭제 <2002.3.9>
4. 해양환경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개정 2004. 2.2>
5. 어장환경의 평가·관리에 관한 연구

6. 어장환경의 회복 및 개선기술에 관한 연구
7. 유해물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개정 2004.2.2>
8. 해저퇴적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해양환경관리기술 및 수질오염에 관한 연구
10. 해수·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의 오염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11. 해양환경 수용용량의 산정에 관한 연구<신설 2004.2.2>
12. 국가 해양환경자료의 정밀도 및 정확도 관리에 관한 연구<신설 2004. 2.2>

④해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해양변동의 원인 및 해양구조에 관한 연구
2. 부유생물에 관한 조사·연구
3. 해양의 해수특성 및 물질순환 연구
4. 이상해양상태에 관한 연구
5. 한국해양자료센터의 운영
6. 해양원격탐사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
7. 수산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4. 2.2>

⑤유해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3.9, 2004.2.2>

1.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유해생물의 변동에 관한 연구
2. 유해생물의 분류와 생리·생태 연구
3. 해양생물의 독성과 오염생물에 관한 연구
4. 적조의 장·단기 예보
5. 유해생물피해 저감기술 및 구제기술에 관한 연구
6. 적조원격탐사기술의 개발 및 적조관련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전문개정 1999.5.24]

제16조의 2 (연수부에 두는 과) ①연수부에 교학과를 둔다.

②교학과장은 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수로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③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 교육훈련의 분석·평가 및 보고서 발간
3. 교관의 관리 및 자질향상
4. 피교육자의 등록·수료등 학사관리
5. 교육장 및 생활관의 운영·관리
6. 교육훈련의 성적평가 및 상훈관리
7. 해양수산업무수행 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개정 2002.3.9>
8. 수산업·해운업 경영인 및 선원에 대한 기술교육
9. 어업인후계자 및 해양관련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10. 어업인에 대한 원격영상교육<개정 2002.3.9, 2004.2.2>

[본조신설 1998.12.31]

제17조 (수산연구소에 두는 과 또는 팀) ①수산연구소에 관리과·자원환경팀·양식연구팀·자원조성팀 및 연어연구팀(동해수산연구소에 한한다)을 둔다. 다만, 제주수산연구소에는 별도로 과 또는 팀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999.5.24, 2004. 2.2>

②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으로, 다른 팀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2004. 2.2>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 2.2>

1. 인사·서무·예산·회계·용도·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 시험조사선의 운영·관리

3. 시험·연구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4. 기타 소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개정 2004. 2.2>

④자원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4.2.2>

1.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 연안관측 및 정선관측<개정 2002.3.9>

2. 어장환경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3. 적조예찰 및 발생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4. 적조피해의 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5. 연안 및 근해 해양의 관측·조사

6. 부유생물에 관한 조사·연구

7. 연근해 수산자원의 동태 및 생물·생태학적 조사·연구

8. 해·어황의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9. 연근해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10. 수산공학에 관한 연구

11. 인공어초에 관한 조사·연구

12. 지역특성별 어구·어법의 개발 및 개량시험 및 연구

13. 지역특성별 어업기자재에 관한 시험·연구

14. 지역특성별 어장시설에 관한 시험·연구

15. 연근해어장의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⑤ 삭제 <2004. 2.2>

⑥양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2>

1. 지역 특산종의 양식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2. 양식생물의 양식환경개선에 관한 시험 및 연구

3. 수산생물에 관한 병리학적·약리학적 시험 및 연구

4. 양식생물의 응용생리에 관한 연구
5. 양식생물의 먹이생물 탐색 및 보존에 관한 연구
6. 양식생물 방류해역의 먹이사슬에 관한 연구
7. 해역별 양식어업의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8. 수산증식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⑦자원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2>

1. 인공어초사업의 적지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
2.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지원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조사
4. 수산자원조성사업관련 위·수탁사업의 수행

⑧연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 2.2>

1. 연어의 종묘생산 및 방류와 그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
2. 회귀성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와 효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냉수성 어종에 대한 종묘생산과 양식기술의 개발 및 연구

⑨수산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2. 2>

제17조의2(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4. 2.2]

제18조 (내수면연구소) 내수면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4. 2.2>

제18조의 2 (전문연구소) 양식환경연구소 및 고래연구센터의 위치 및 분장 사무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3.9] <개정 2004. 2.2>

제19조 (연구센터) 연구센터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5.24, 2004.2.2>

제20조 삭제<2004. 2.2>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의 과단위 기구

제21조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과) ①국립해양조사원에 관리과·해양과·측량과 및 해도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수로부이사관 또는 수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5. 예산·결산·회계 및 각종 계약의 체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해양조사업무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전산실의 운영 및 전산장비의 관리
9. 해양조사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
10.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2000.7.14>

1.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양관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해양의 물리학적 조사
4.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5. 평균해면 및 기본수준면의 결정고시
6. 조석 및 조류의 추산 및 예보

7. 해양자료의 제공 및 해양조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관측업무의 위탁 및 수탁
9. 검조소의 신설 및 이설계획의 수립·시행
10.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관측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⑤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2000.7.14 2003.12.3>

1. 수로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수로측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국가해양기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저지형과 지질에 관한 조사
5. 수로측량업무의 수탁·위탁
6. 수로측량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심사
7. 영해기점에 관한 조사 및 관할해역의 획정에 관한 사항
8. 수로조사업의 등록 및 지도
9. 일반수로 조사에 관한 사항
10. 해양조사장비의 관리·운영
11. 해양조사 관련 역사자료의 보관·관리
12. 해양조사사무소의 수로측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3. 및 14. 삭제 <2000.7.14>
15. 해양기본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3>

⑥해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2000.7.14>

1. 수로도서지 간행계획의 수립·시행
2. 수로도서지의 편찬·간행
3. 수로도서지 편수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4. 수로도서지 간행업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해도원도의 보관·관리
6. 전자해도의 제작에 관한 사항
7. 항해안전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
8. 해도제작업의 등록·관리
9.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및 수로도서지 판매 등의 대행업자 지정
10. 연안항로의 조사 및 자료수집

제22조 (명칭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 (해양조사사무소에 두는 과) ①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둔다. <개정 2002.12.30>

②해양과장은 행정주사 또는 수로주사로, 측량과장은 수로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서기관·수로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수로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수로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2.12.30>

③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 임용·교육훈련·급여·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물품조달 및 관리

6. 삭제 <2000.7.14>

7. 해양조사자료의 수집·분석

8. 검조소의 운영 및 관리

④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1. 수로측량의 시행

2. 보정측량의 시행 및 감독

3. 기본수준점의 조사

4. 조사선의 운영·관리

5. 지방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6. 해양조사장비의 운용 및 수리·보수

제5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과단위 기구<개정 2001.3.28>

제24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두는 과) ①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총무과·품질검사과 및 품질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3.28, 2002.10.2>

②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수산서기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01.3.28, 2002.10.2>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8>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심사평가 및 감사

5. 수산물품질검사업무의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02.10.2>

6. 수산물품질검사자료의 관리·운영<개정 2002.10.2>

7. 전산실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개정 2002.10.2>

8. 그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3.28, 2002.10.2>

1.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수산물검사에 관한 지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검사에 관한 조사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4.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및 관리

5. 수산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수산물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8, 2002.10.2>

1.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 및 통계와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분석검사 및 검역과 관련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검정

5. 검사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5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1.3.28>

제26조 (지원에 두는 과) ①부산지원에 관리과 및 품질검사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수산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8>

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8>

1. 인사·서무·예산 및 회계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수산물의 분석·검사에 관한 사항
4. 정밀검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품질검사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8>

1. 수산물의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집행
2. 수산물검사에 관한 제도개선
3. 수산제품의 포장·표준품의 기준설정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
4. 이식용 수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

제6장 (제27조) 삭제 <1998.12.31>

제7장 어업지도사무소의 과단위 기구<개정 2004.2.2>

제28조 (사무소에 두는 과) ①어업지도사무소에 관리과·운용과 및 안전정보과(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한한다)를 둔다.<개정 2004.2.2>

②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으로, 운용과장은 행정사무관·조선사무관·수산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안전정보과장은 전문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04.2.2>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6.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업지도선수리계획의 수립·집행
2.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3. 어업의 지도·단속
4. 선용품의 수급·관리

⑤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 2.2>

1. 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관련 통신운용
2. 어로지도상황실 및 무선국의 운영
3. 어업지도선의 무선국 전파 관리
4. 어업지도선의 통신전자장비 운용·관리
5.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소속된 어업지도선의 종합적 상황관리<신설 2004. 2.2>

제28조의2(명칭 등) 어업지도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의 2와 같다. [본조신설 2004.2.2]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의 과단위 기구

제29조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과) ①지방해양수산청에 다음 각호의 과를 둔다. <개정 1998.8.1, 1999.5.24, 2000.12.30, 2002.10.2>

1. 총무과
2. 선원선박과(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3. 선원해사과(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4. 항무과(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5. 항만물류과(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6. 해양환경과(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7. 환경안전과(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8. 항만공사과(부산·인천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9. 어항공사과(마산·목포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10. 항로표지과(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11. 수산관리과

②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선원해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 또는 선박서기관으로, 항만물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안전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선박서기관으로, 수산관리과장은 수산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수로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8.1, 1999.5.24, 2002.10.2, 2003.7.25, 2004.2.2>

③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무과장은 행정사무관·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마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선박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여수·울산·동해·군산·포항·제주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선박과장은 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과장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어항공사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군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과장은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마산·동해·제주 및 평

택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과장은 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과장 및 어항공사과장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어항공사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수로서기관 또는 수로사무관으로, 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제주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장은 수로사무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여수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장은 수산서기관·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제주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장은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8.1, 1999.5.24, 2000.7.14, 2000.12.30, 2002.10.2, 2003.7.25>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1. 인사 및 보안
2. 관인관리, 문서의 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관리·방호
4. 청내 용품 조달
5. 시험의 시행
6. 예산·결산 및 심사평가
7. 공사용 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부산·인천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8. 세입의 부과·징수(항만시설사용료·관유물대여료 및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제외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및 계약사무(부산·인천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에는 계약사무를 제외한다)
9. 비상계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업무
10. 전산기기의 운영·관리와 전산업무개발(부산·인천·여수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다)

11.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선원선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1.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및 지도
2. 해상운송사업 관계단체의 지도
3. 해상운임에 관한 사항
4. 항로의 개척·지도
5. 선박의 등록
6. 삭제 <1998.8.1>
7.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8. 선원보험 및 선원노동쟁의 조정
9. 선원의 복지
10. 선원근로감독
11. 선원 외국취업
12.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사항
13. 항만국통제에 관한 사항
14. 해상위험물컨테이너 점검에 관한 사항
15. 선박 안전시설의 검사·확인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등에 관한 사항
17.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기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02.10.2>

⑥선원해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2>

1.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및 지도

2. 해상운송사업관련 단체의 지도
3. 해상운임에 관한 사항
4. 항로의 개척·지도
5. 선박의 등록
6.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의 교부
7. 선원보험과 선원노동쟁의의 조정
8. 선원근로감독과 선원의 복지 및 외국취업
9. 여객터미널의 관리(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4. 2.2>

⑦항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2.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4.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지도
5. 항만시설·장비등의 관리·운영
6. 선석 및 정박지의 관리·운영
7. 선박의 입·출항 신고<개정 2002.3.9>
8. 삭제 <2002.3.9>
9. 도선사의 지도
10. 항만보안
11. 항만관제실의 관리·운영
12. 항만시설사용료 및 관유물대여료의 부과·징수
13. 전산기기의 운영·관리와 전산업무개발(여수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⑧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2.10.2>

1.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물류개선계획의 수립<개정 2004.2.2>
2.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4.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지도
5. 항만시설·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4.2.2>
6. 선석(船席) 및 정박지의 관리·운영(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4.2.2>
7. 선박의 입·출항 신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4.2.2>
8. 도선사의 지도
9. 항만보안
10.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1.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 점용료의 부과·징수
12. 전산기기의 운영·관리와 전산업무개발
13. 부산항에 설립된 항만공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신설 2004.2.2>
14. 항만배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신설 2004. 2.2>
15.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신설 2004.2.2>

⑨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1.8.8>

1. 무역항 항만구역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무역항 항만구역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징수
3. 해역수질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의 관리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의 관리
7.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육성·지원
8. 바다청소의 날 행사의 시행
9.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
10. 개항단속<개정 2002.3.9>
11.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그 지도(항로표지용 선박을 제외한다)<개정 2002.3.9>

⑩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2.10.2>

1. 해역수질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의 관리
3.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4. 해양시설의 관리
5.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육성·지원
6. 바다청소의 날 행사의 시행
7.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
8. 개항단속
9. 관공선(항로표지용 선박을 제외한다)의 관리·운영 및 지도
10.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사항

11. 항만국통제에 관한 사항
12. 해상위험물컨테이너의 점검
13. 선박안전시설의 검사·확인과 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14.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
15.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16. 그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7. 항만관제실의 관리·운영
18. 제13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⑪항만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감독과 준공확인
2. 항만공사용 기계·장비의 운용과 유지·수선
3. 항만시설의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업무
4.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6.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심사평가
7.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국가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8. 항만시설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9. 제1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울산·동해·군산·제주 및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에 한한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3.7.25>

⑫어항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항공사의 설계
2. 어항공사의 공사집행·시공감독 및 준공확인

3.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4. 어항시설의 피해복구공사

⑬항로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4>

1.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2.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4. 항로표지의 설치·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5.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설계 및 시공감독

6.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운영

7.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폐지·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규신고(신규항만·항로개설·항로변경 및 특수번호표지를 제외한다)<개정 2002.3.9>

8.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의 신고수리<개정 2002.3.9>

9. 부표류의 제작·수리·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

10. 부표관리사무소 및 부표관리·측정선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2.3.9>

11. 항로표지기능의 측정에 관한 사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2.3.9>

12. 등대박물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개정 2002.3.9>

⑭수산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지도

2.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수산기술의 지도·교육

3. 기술지도선 및 어촌지도장비의 관리·운영
4.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
5.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6.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업생산통계 조사의 실시 <신설 2002.12.30>

제30조 부산·인천 및 여수항건설사무소에 두는 과) ①부산 및 인천항건설사무소에 계획조사과·항만공사과·항만개발과·항만정비과(부산항건설사무소에 한한다)를 두고, 계획조사과장·항만공사과장 및 항만개발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항만정비과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8.1, 2003.7.25, 2004.2.2>

②여수항건설사무소에 항만공사과 및 어항공사과를 두고, 항만공사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어항공사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③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계약 및 예산집행
3. 물품 및 공사용 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5.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6. 부산·마산·울산·포항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할내의 항만(어항을 포함한다)공사에 대한 시험·품질관리 및 검사(부산항건설사무소에 한한다)
7. 인천·여수·동해·군산·목포·대산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내의 항만(어항을 포함한다)공사에 대한 시험·품질관리 및 검사(인천항건설사무소에 한한다)
8.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심사평가와 준공확인

9. 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11. 공유수면의 관리·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부산항건설사무소에 한한다)<신설 2004. 2.2>
1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항만공사과장(인천항건설사무소에 한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8.1, 개정 2004. 2.2>

1. 항만시설공사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3. 공유수면의 관리·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4.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안전관리
5.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6.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수선<개정 2004. 2.2>
7.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및 방재업무<개정 2004. 2.2>
8. 항만배후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국유하역장비관리의 지도·감독<개정 2004. 2.2>

⑤항만공사과장(여수항건설사무소에 한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8.1>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계약 및 예산집행
3. 물품 및 공사용 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5.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6. 항만시설공사시행계획의 수립·조정

7.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8. 공유수면의 관리·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9.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안전관리
10. 항만공사용 기계 및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
11.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및 방재업무
12. 항만배후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국유하역장비관리의 지도·감독
13.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심사평가와 준공확인
1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어항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항공사의 설계
2. 어항공사의 공사집행·시공감독 및 준공확인
3.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4. 어항시설의 피해복구공사

⑦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4. 2.2>

1. 신항만공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신항만공사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
3. 신항만공사의 공정·시공감독·안전관리 및 심사평가
4. 신항만준설공사에 관한 지질조사·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5. 신항만공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⑧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4. 2.2>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공사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

3.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시공감독·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4.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
5. 항만배후수송시설의 계획수립·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6. 국유하역장비 관리의 지도 및 감독
7. 항만방재업무
8. 제6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31조 (갑문관리소) ①갑문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갑문관리소에 운영과·기전과 및 보수과를 둔다.

③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기전과장 및 보수과장은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각종 계약 및 예산집행
3. 물품 및 공사용 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갑문의 관리·운영
5. 해상관측의 기록 유지
6.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갑문 및 동 부대시설의 개량 계획
2. 갑문 및 동 부대시설의 유지·점검
3. 기자재수급계획의 수립

⑥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갑문 및 동 부대시설의 복구계획 수립
2. 갑문 및 동 부대시설의 보수공사설계
3. 갑거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의 유지·보수
4. 보수공장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31조의2(해양수산사무소) ①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통영·완도·고흥해양수산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다른 소장은 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조선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해양수산사무소에 항만운영과(통영·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한한다)·수산관리과(통영·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한한다) 및 항만정보과(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한한다)를 둔다.

③항만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수산관리과장은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항만정보과장은 전문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항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계약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입·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7.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8.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9.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지도

1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수산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지도

2.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수산기술의 지도·교육

3. 기술지도선 및 어촌지도장비의 관리·운영

4.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

5.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6.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업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업생산통계조사의 실시

⑥항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관제실의 관리 및 운영

2.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항만교통정보 제공

3. 완도항 인근해역의 항행정보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통신시설 및 통신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석 및 정박지 지정(야간 및 공휴일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 2.2]

제32조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등) ①위성항법중앙사무소장은 수로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해상무선표지통제소장과 해상무선표지소장은 수로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으로, 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은 수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8.1, 1999.5.24, 2003.7.25, 2004.2.2>

②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 (명칭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고, 건설사무소·감문관리소·해상무선표지통제소·해상무선표지소·위성항법중양사무소 및 항로표지종합관리소의 소속·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으며,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개정 1999.5.24, 2004. 2.2>

제8장의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신설 00.12.30>

제33조의2(청장) ①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의3 삭제 <2002.6.28>

제33조의4(보령해양수산사무소) ①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보령해양수산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4. 2.2>

②소장은 서기관·수산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7.25, 2004. 2.2>

③소장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의5(위치 및 관할구역 등)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7의2와 같고, 보령해양수산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의 단위 기구

제34조 (조사관) ①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조사관 각 1인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심판원의 경우 5급공무원 정원 범위내에서 조사관 각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2.3.9>

②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선박부이사관 또는 선박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선박서기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9.8.24, 2000.7.14>

1. 보안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 기타 인사사무
5. 기획·예산·경리 및 물품의 관리·조달
6. 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보관
7. 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교부
8. 심판변론인의 등록
9.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10.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11.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12.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13.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14.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어업지도사무소·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공무원 정원은 각각 별표 12 내지 별표 14 및 별표16 내지 별표18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8.24, 2001.3.28, 2002.3.9, 2004.2.2>

②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신설 2000.12.30, 개정 2002.6.28>

제37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과 별표 11 및 별표 1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정책국의 해양보전과장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생명공학연구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02.10.2>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1 내지 별표 18에 불구하고 별표 19 내지 별표 27을 각각 적용한다.
-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9 내지 별표 27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1 내지 별표 18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④(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90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8, 행정서기 9, 별정직 7급상당 26, 별정직 9급상당 43)은 1998년 7월 1일부터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통계청에 이체한다.

부 칙<1998.8.1 해양수산부령 제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1998.12.31 해양수산부령 제77호>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1999.5.24 해양수산부령 제1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7.14 해양수산부령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중 “수산연구관 또는 별정직 1급상당 1”을 삭제하고, 수산연구관 “90”을 “91”로 하는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해양수산부령 제182호>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8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및 별표 14에 의해 감축되는 정원 6인(기능7급 1, 기능8급 1, 기능9급 1, 기능10급 3)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②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각호외의 부분, 제16조 각호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③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소장”을 “품질검사원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검사소”를 “품질검사원”으로 한다.

제5조 전단중 “검사소”를 “품질검사원”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검사소장”을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검사소”를 각각 “품질검사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검사소장”을 각각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검사소”를 “품질검사원”으로 한다.

제10조중 “검사소장”을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④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다목 단서,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후단, 별표 3의2의 1.(2)·2.나 및 3.가, 별표 4의 2.나, 별표 4 비고 제1호 후단 및 제2호중 “검사소장”을 각각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8조 후단중 “검사소장등”을 “품질검사원장등”으로 한다.

별표 5 1.검사표시(수출용)의 모형란중 “N.F.P.I.S. KOREA”를 각각 “N.F.P.Q.I.S. KOREA”로 하고, “검사소약호”를 “품질검사원약호”로, “검사소인”을 “품질검사원인”으로,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하고, 동표 2.검사표시(정부비축용 및 국내소비용)의 모형란중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National Fisheries Products Inspection Station”을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로 한다.

별표 6의 모형란중 “MOMAF N.F.P.I.S.”를 각각 “MOMAF N.F.P.Q.I.S.”로 하고, 동표 용도란중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하며, 비고란중 “검사소장”을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중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NATIONAL FISHERIES PRODUCTS INSPECTION STATION”을 각각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로 하고,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INSPECTION STATION ”을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로 한다.

⑤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다.

부 칙<2001.8.8 해양수산부령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9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진흥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으로,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를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고시”로 한다.

②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조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1조제2항제2호, 제60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1항중 “진흥원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중 “진흥원장”을 “과학원장”하며, 별지 제51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⑤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4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⑥어장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⑦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원양자원과장”을 각각 “해외자원과장”으로 한다.

⑧육성수면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국립수산진흥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⑩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⑪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뒷쪽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부 칙<2002.10.2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해양수산부령 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25 해양수산부령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2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출장소의 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 칙<2004. 3.22 해양수산부령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4. 2.2>

수산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제9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해수산 연 구 소	강원도 강릉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서해수산 연 구 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중 영광군·함평군
남해수산 연 구 소	전라남도 여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영광 군·함평군을 제외한다), 경상남도(양산 시를 제외한다)
제주수산 연 구 소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별표 1의2] <신설 2004. 2.2>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의2관련)

명 칭	위 치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부산광역시

[별표 2]<개정 2004. 2.2>

내수면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제18조관련)

명 칭	위 치	분 장 사 무
내수면생태 연 구 소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내수면에서의 수산자원조성과 생태환경 및 담수생물의 종보존에 관한 연구
내수면양식 연 구 소	경상남도 진해시	내수면에서의 담수생물의 양식기술개발 및 질병에 관한 연구

[별표 2의2]<신설 02. 3. 9, 개정 2004. 2.2>

양식환경연구소 및 고래연구센터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18조의2관련)

명 칭	위 치	분 장 사 무
양식환경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해양환경과 수산생물의 위생 및 양식에 관한 연구
고래연구센터	울산광역시	고래류에 관한 연구

[별표 3]<개정 2004. 2.2>

연구센터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제19조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분 장 사 무
동해수산 연 구 소	어류연구 센 터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어류의 신품종개발 종보존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양식사료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양식배합사료 개발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심해수산 자원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심해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서해수산 연 구 소	갑 각 류 연구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갑각류와 그 종보존에 관한 시험 및 연구
	갯벌연구 센 터	전라북도 군산시	갯벌생물 생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갯벌환경에 관한 연구
남해수산 연 구 소	패류연구 센 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패류와 그 종보존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어류육종 연구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어류 육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시험 및 연구
	해 조 류 연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조류와 그 종보존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제주수산 연 구 소	패류육종 연구센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패류 육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시험 및 연구

[별표 4] 삭제 <2004.2.2>

[별표 5] <개정 02.10. 2>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2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남해해양조사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마산·여수·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해남각(북위 34° 17' 20" 동경 126° 3 1' 38")으로부터 220° 로 그은 선과 간절곶 등대(북위 35° 21' 00" 동경129° 22' 00")로 부터 90° 로 그은 선 사이의 남측 해역
동해해양조사 사무소	강원도 동해시	울산·포항·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간절곶등대(북위35° 21' 00" 동경129° 22' 0 0")로부터 90° 로 그은 선의 북측 해역
서해해양조사 사무소	충청남도 서천군	인천·군산·목포·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해남각(북위34° 17' 20" 동경126° 31' 38")으로부터 220° 로 그은 선의 서측 해역

[별표6] <개정 1998.8.1, 2001.3.28, 2004.2.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중 김포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수원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화성시를 제외한 전지역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 중구 영종동 및 용유동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중 김포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수원시·오산시·화성시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중 평택시·안성시, 충청북도중 보은군·영동군·옥천군을 제외한 전지역, 충청남도중 당진군·태안군·서산시·아산시·천안시
장항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중 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청남도중 당진군·태안군·서산시·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전지역, 전라북도
여수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화순군·보성군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중 목포시·나주시·영광군·장성군·담양군·함평군·영암군·무안군·진도군·신안군
완도지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전라남도중 완도군·강진군·해남군·장흥군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중 진해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중 진해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를 제외한 전지역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문진지원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인천공항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인천광역시중 중구 영종동 및 용유동

[별표 6의2] <신설 2004. 2.2>

어업지도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의2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해어업 지도사무소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해남각(북위 34도17분20초, 동경 126도31분38초)에서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00분의 점과 북위 32도11분, 동경 126도00분의 점에서 방위각 226도로 그은 선의 동측해역
서해어업 지도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해남각(북위 34도17분20초, 동경 126도31분38초)에서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00분의 점과 북위 32도11분, 동경 126도00분의 점에서 방위각 226도로 그은 선의 서측해역

[별표 7] <개정 98.8.1, 00.7.14, 00.12.30, 03.7.25>

지방해양수산청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3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와 진해시중 부산항에 한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장흥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와 진해시중 부산항을 제외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장흥군을 제외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을 제외한다), 충청남도(평택항에 한한다)

[별표 7의2] <신설 00.12.30>

대전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제33조의5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대전지방해양수산청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장항항 및 평택항을 제외한다)

[별표 8] <개정 99.5.4, 00.7.14, 00.12.30, 2003.7.25>

건설사무소·감문관리소·해양무선표지통제소·해양무선표지소·위성항법중앙사무소 및 항로표지종합관리소의 소속·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33조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부산 지방 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와 진해시중 부산항에 한한다)
인천 지방 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감문관리소	인천광역시	인천항
여수 지방 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장흥군
목포 지방 해양수산청	광주해양무선표지소	전라남도 함평군	전국 해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완도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화원면을 제외한다)
포항 지방 해양수산청	포항해양무선표지통제소	경상북도 포항시	전국 해역
군산 지방 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대전광역시	전국 해역

[별표 9] <개정 98.8.1, 01.3.28, 03.7.25, 전문개정 2004.2.2>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3조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항(광양시를 제외한다)
	광양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중 광양시, 순천시
	장흥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중 장흥군·보성군
	고흥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사천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중 남해군·하동군
	고성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온산해양수산 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중 울주군 및 남구 황성동 일원(방과제 안쪽에 한 한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 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중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삼척해양수산 사무소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중 태백시·삼척시
	묵호해양수산 사무소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 사무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부안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중 김제시·부안군
	고창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영광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중 영광군·함평군
	진도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해남해양수산 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중 해남군·강진군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포항신항해양 수산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신항
	영덕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중 울진군·영덕군
	울릉해양수산 사무소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서귀포해양 수산사무소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중 서귀포시·남제주군

[별표 10] 삭제 <2004. 2.2>

[별표 10의2] <신설 00.12.30, 2004.2.2>

보령해양수산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3조의5관련)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중 보령시·홍성군·서천군·부여군·논산군

[별표 11] <개정 99.5.24, 00.7.14, 00.12, 01.3.28, 02.3.9, 02.10.2, 02.12.30, 03.7.25, 04.2.2>

해양수산부공무원정원표(제35조관련)

총 계	490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7
차관보(1급상당)	1
비상계 획관(2급상당)	1
비상계 획보좌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비상계 획담당(6급상당)	1
통계담당(7급상당)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 계	409
1급 내지 9급 소계	408
관리관	1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수로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이사관 · 부이사관 · 별정직 2급상당 또는 별정직 3급상당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별정직 2급상당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1
이사관 · 수산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산연구소 또는 어촌지도관	2
이사관 · 수산이사관 · 환경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환경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또는 수산연구소	1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산연구소 또는 어촌지도관	1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3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정보통신부이사관 ·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수로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3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수산연구원 또는 어촌지도관	2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3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수로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수로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수산연구원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수산연구원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전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원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수산연구원 또는 어촌지도관	3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전산서기관 · 정보통신서기관 · 수산연구원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수산연구원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선박서기관 · 행정사무관 · 조선사무관 또 는 선박사무관	5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선박서기관 · 정보통신서기관 · 전산서기 관 · 행정사무관 · 조선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전 무사무관 · 통신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로서기관 · 시설서기관 · 정보통신서기 관 · 행정사무관 · 수로사무관 · 전기사무관 · 전무사무관 · 통 신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정보통신서기 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 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시설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또는 기 계사무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수로서기관 · 시설서기관 · 전산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 무관 · 수로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화공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시설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4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시설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선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6
서기관 · 선박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1

서기관 · 시설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	1
서기관 · 전산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선박사무관 · 화공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관 · 전산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화공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시설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자원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 기계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4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전산서기관 · 정보통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전무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서기관 · 수산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선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1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선박사무관 · 토목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3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화공사무관 · 수로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5
행정사무관 · 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8
행정사무관 · 수로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선박사무관 · 화공사무관 · 전산사무관 ·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토목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화공사무관 · 선박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3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화공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자원사무관 · 선박사무관 · 수로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전기사무관 · 기계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3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5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전무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3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3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0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 선박사무관 · 전무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7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5
행정주사	18
행정주사 또는 선박주사	2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선박주사 또는 토목주사	24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선박주사 · 토목주사 또는 사서주사	3
행정주사 · 수산주사 · 환경주사 · 화공주사 · 수로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토목주사	4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조선주사 · 선박주사 · 전무주사 또는 통신주사	5

행정주사 · 조선주사 또는 선박주사	11
행정주사 · 선박주사 · 화공주사 · 전산주사 · 전무주사 · 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6
행정주사 · 수로주사 · 건축주사 · 전기주사 · 전무주사 · 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5
행정주사 · 토목주사 · 건축주사 ·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1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7
수산주사	1
선박주사	2
토목주사	4
통신주사	1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자원주사 · 선박주사 · 수로주사 · 토목주사 · 건축주사 · 전기주사 · 기계주사 또는 수산연구사	5
행정주사 · 수산주사 · 환경주사 · 선박주사 · 전산주사 · 화공주사 또는 수산연구사	3
행정주사 · 수산주사 · 환경주사 · 선박주사 · 화공주사 또는 수산연구사	4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14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전무주사 · 전산주사 · 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4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조선주사 · 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3
행정주사 · 수산주사 · 환경주사 · 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5

행정주사 · 수산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11
행정주사 · 수산주사 · 선박주사 · 조선주사 · 전무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5
행정주사 · 수산주사 · 토목주사 · 건축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5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수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 선박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 조선주사보 · 선박주사보 · 전무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조선주사보 또는 선박주사보	2
행정주사보 · 토목주사보 · 건축주사보 · 전기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화공주사보 · 선박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수산연구사	1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 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4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전무주사보 · 수산연구사 또는 어촌지도사	1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또는 어촌지도사	2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 토목주사보 · 건축주사보 또는 어촌지도사	1

연구직 소계	1
수산연구사	1
기능직 계	72
기능8급 방호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운전원	3
기능9급 사무원	9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교환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51
기능10급 방호원	2

[별표 12] <개정 99.5.24, 00.7.14, 02. 3. 9, 02.10. 2, 03.7.25, 04.2.2>

국립수산과학원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관련)

총 계	645
일반직 계	424
1급 내지 9급 소계	127
수산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또는 수산연구관	3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	1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 수로서기관 · 시설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조선사무관 · 수산사무관 · 선박사무관 또는 전무사무관	1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6
수산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2
선박사무관 · 수로사무관 · 토목사무관 또는 조선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18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수산주사	1
수산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8
환경주사	1
조선주사 또는 선박주사	1
선박주사	9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전무주사	3
행정주사보	15
수산주사보	2
선박주사보	9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4
전무주사보	3
행정서기	3
수산서기	2
선박서기	8

전무서기	4
전무서기보	1
연구직 소계	297
수산연구관	91
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5
수산연구사	193
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8
기능직 소계	221
기능6급 통신장	1
기능6급 선장	5
기능6급 기관장	4
기능7급 통신원	1
기능7급 전화수리장	1
기능7급 전기장	2
기능7급 기계장	2
기능7급 선장	13
기능7급 기관장	5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통신원	2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기계원	1
기능8급 선장	2
기능8급 선원	2
기능8급 기관장	2
기능8급 기관원	5
기능9급 통신원	4
기능9급 전기원	8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선원	14
기능9급 기관원	4
기능9급 위생원	1
기능9급 사무원	3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교환원	2
기능10급 전기원	8
기능10급 기계원	4
기능10급 운전원	17
기능10급 선원	20
기능10급 기관원	8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원	58
기능10급 방호원	13

[별표 13] <개정 99.5.24, 01.3.28, 01.8.8, 02. 3. 9, 02.10. 2, 04.2.2>

국립해양조사원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관련)

총 계	220
일반직 계	121
1급 내지 9급 소계	121
이사관·수료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수로부이사관	1
수로부이사관 또는 수로서기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수로서기관	1
수로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수로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수로사무관	1
수로서기관 또는 수로사무관	3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수로사무관	2
기계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1
선박사무관	1
수로사무관	7
수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수로주사	3

기계주사 또는 수로주사	1
기계주사 또는 전자통신주사	1
선박주사	2
수로주사	28
수로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수로주사 또는 전자통신주사	1
전산주사	1
전무주사	2
행정주사보	10
선박주사보	2
수로주사보	20
수로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3
전무주사보	1
행정서기	4
선박서기	2
수로서기	6
수로서기 또는 전자통신서기	1
기능직 계	99
기능6급 선장	7
기능6급 기관장	6
기능7급 통신장	1

기능7급 선장	6
기능7급 기관장	6
기능8급 통신원	4
기능8급 선장	11
기능8급 기관원	8
기능9급 통신원	3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선원	11
기능9급 기관원	8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선원	9
기능10급 기관원	2
기능10급 사무원	6
기능10급 방호원	2

[별표 14] <개정 99.5.24, 01.3.28, 02. 3. 9, 04. 2.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관련)

총 계	202
일반직 계	170
1급 내지 9급 소계	170
이사관·수산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수산부이사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수산서기관	1
수산서기관	1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연구관	1
수산서기관 또는 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	1
수산사무관	15
수산사무관 또는 수산연구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8
수산주사	34
수산주사·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행정주사보	13
수산주사보	27
수산주사보·수산연구소 또는 환경연구소	15
수산서기	37
기능직 계	32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10급 난방원	2
기능10급 운전원	10
기능10급 사무원	17
기능10급 방호원	2

[별표 15] 삭제 <98.12.31>

[별표 16] <개정 99.5.24, 00.7.14, 00.12.30, 03.12.3, 04. 2.2>

어업지도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관련)

총 계	524
일반직 계	245
1급 내지 9급 소계	245
서기관·공업서기관·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2
수산서기관·선박서기관·수산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2
행정사무관·조선사무관·수산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	2
수산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21
전무사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수산주사 또는 선박주사	2
수산주사	10
수산주사 또는 선박주사	5
의료기술주사	5
선박주사	31
수산주사·선박주사 또는 전무주사	6
전무주사	18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수산주사보 또는 선박주사보	1
수산주사보	15
선박주사보	32
수산주사보 · 선박주사보 또는 전무주사보	3
전산주사보	1
전무주사보	19
행정서기 · 수산서기 또는 선박서기	2
수산서기	15
선박서기	27
수산서기 · 선박서기 또는 전무서기	1
전무서기	19
기능직 계	279
기능6급 선장	24
기능6급 기관장	14
기능7급 선장	15
기능7급 기관장	14
기능8급 선장	1
기능8급 선원	16
기능8급 기관장	1
기능8급 기관원	21

기능9급 선원	20
기능9급 기관원	13
기능9급 위생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선원	52
기능10급 기관원	47
기능10급 위생원	35
기능10급 사무원	3

[별표 17] <개정 '99.5.24, '00.7.14, '00.12.30, '02.3.9, '02.10.2, '02.12.30, '03.7.25, '03.12.3, '04.2.2>

지방해양수산청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관련)

총 계	1,818
별정직 계	19
통계담당(7급상당)	6
통계담당(8급상당)	13
일반직 계	1,108
1급 내지 9급 소계	1,108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환경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수로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이사관 · 공업이사관 · 수산이사관 · 환경이사관 · 선박이사관 · 시설이사관 · 수로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환경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환경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수로부이사관 · 정보통신부이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2

부이사관 · 수산부이사관 · 선박부이사관 · 시설부이사관 · 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또는 선박서기관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또는 선박서 기관	2
서기관 ·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6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수로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환경서기관 · 선박서기 관 · 시설서기관 · 수로서기관 · 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어 촌지도관	5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수산서기관 · 선박서기관 또는 어촌 지도관	3
수산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서기관 · 공업서기관 · 선박서기관 · 행정사무관 · 조선사무 관 또는 선박사무관	1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	2
수산서기관 ·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2

행정사무관	19
행정사무관 ·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11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	8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수로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전무사무관 · 통신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
행정사무관 · 토목사무관 ·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1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2
수로사무관	13
수로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수로사무관 · 통신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2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조선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2

토목사무관	9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토목사무관 · 건축사무관 ·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13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
행정사무관 · 수산사무관 · 조선사무관 · 선박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21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1
행정주사	104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환경주사	4
행정주사 · 환경주사 또는 화공주사	12
행정주사 · 환경주사 · 화공주사 또는 토목주사	1
화공주사	1
건축주사	4
기계주사	3
선박주사	1
수로주사	19

수로주사 · 전송주사 · 통신주사 또는 전기주사	4
수로주사 · 전송주사 또는 통신주사	2
전기주사	3
전무주사	13
전무주사 또는 전송주사	8
전무주사 · 전송주사 또는 전기주사	1
전산주사	7
전송주사	5
조선주사 또는 선박주사	52
토목주사	21
토목주사 · 건축주사 ·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38
토목주사 ·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3
수산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96
행정주사보	83
행정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화공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
행정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화공주사보	7
행정주사보 · 환경주사보 · 화공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1
화공주사보	2
건축주사보	3
기계주사보	3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3
수로주사보	20
수로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1
수로주사보 · 전송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
수로주사보 · 전송주사보 · 통신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2
선박주사보 또는 전무주사보	2
전기주사보	5
전무주사보	18
전무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6
전산주사보	10
전송주사보	12

조선주사보 또는 선박주사보	31
토목주사보	16
토목주사보 · 건축주사보 ·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23
토목주사보 ·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5
수산주사보 또는 어촌지도사	71
행정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토목서기	1
행정서기 · 환경서기 · 화공서기 또는 토목서기	9
기계서기 또는 전기서기	6
수로서기	10
수로서기 또는 전송서기	1
수로서기 · 전송서기 · 통신서기 또는 전기서기	1
수로서기 · 전송서기 또는 통신서기	2
선박서기 또는 전무서기	2
전무서기	17
전무서기 또는 전송서기	21
전무서기 · 전송서기 또는 전기서기	4
전산서기	2
전송서기	5

토목서기	8
토목서기·건축서기·기계서기 또는 전기서기	12
토목서기·기계서기 또는 전기서기	1
통신서기	3
수산서기 또는 어촌지도사	39
선박서기보 또는 전무서기보	2
전무서기보	9
전무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4
전무서기보·전송서기보 또는 전기서기보	1
기능직 계	691
기능6급 건축장	2
기능6급 통신장	1
기능6급 전기장	6
기능6급 기계장	10
기능6급 선장	39
기능6급 기관장	21
기능6급 등대장	46

기능7급 통신장	1
기능7급 전기장	5
기능7급 기계장	5
기능7급 선장	31
기능7급 기관장	33
기능7급 등대장	42
기능8급 토목원	4
기능8급 건축원	3
기능8급 통신원	28
기능8급 전기원	4
기능8급 기계원	1
기능8급 선장	33
기능8급 기관원	16
기능8급 등대원	44

기능9급 토목원	9
기능9급 건축원	4
기능9급 통신원	2
기능9급 전기원	7
기능9급 기계원	8
기능9급 선원	10
기능9급 기관원	24
기능9급 등대원	25
기능9급 사무원	12
기능10급 토목원	3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통신원	8
기능10급 교환원	2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7
기능10급 난방원	13

기능10급 운전원	21
기능10급 선원	6
기능10급 기관원	5
기능10급 등대원	1
기능10급 사무원	135
기능10급 방호원	11

[별표 18] <개정 99.8.24, 00.7.14, 02. 3. 9>

해양안전심판원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관련)

총 계	78
별정직 계	17
해양안전심판원 중앙심판원장(1급상당)	1
해양안전심판원 지방심판원장(2급상당)	4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2급상당)	4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4급상당)	8
일반직 계	45
1급 내지 9급 소계	45
선박이사관 또는 선박부이사관	1
선박서기관	4
선박서기관 또는 선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6
선박사무관	4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선박주사	1
선박주사	8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선박주사보	2
선박주사보	5

행정서기	5
기능직 계	16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10급 운전원	5
기능10급 사무원	10

[별표 19] <신설 00.12.30, 개정 02.6.28, 02.12.30, 03.7.25, 04.2.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관련)

총 계	95
계약직 계	1
청 장	1
별정직 계	2
통계담당(7급상당)	1
통계담당(8급상당)	1
일반직 계	58
1급 내지 9급 소계	58
4급 또는 어촌지도관	1
5급	4
5급 또는 어촌지도관	1
6급	16
6급 또는 어촌지도사	8
7급	14
7급 또는 어촌지도사	5
8급	5
8급 또는 어촌지도사	3
9급	1
기능직 계	34
기능6급	5
기능7급	6
기능8급	4
기능9급	6
기능10급	13

[별표 20] 내지 [별표 24] 삭제 <99.5.24>
[별표 25] 삭제 <98.8.1>
[별표 26] 및 [별표 27] 삭제 <99.5.24>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여 백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1999. 1.29 법률 제5711호
개정 1999. 5.24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
개정 2002. 3.25 법률 제666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責任運營機關의 組織·人事·豫算·會計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行政運營의 효율성과 行政서비스의 質的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責任運營機關"이라 함은 政府가 수행하는 事務중 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競爭原理에 따라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한 事務에 대하여 責任運營機關의 長에게 行政 및 財政상의 自律性을 부여하고 그 運營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하는 行政機關을 말한다.

第3條 (운영원칙) ①責任運營機關은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부여한 事業目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機關運營의 獨立성과 自律성이 보장된다.

②責任運營機關의 長(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은 당해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4條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①責任運營機關은 그 事務가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大統領令으로 設置한다.

1. 機關의 主된 事務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行政서비스를 제공하고 成果測定基準의 開發과 成果의 測定이 가능한 事務

2. 機關運營에 필요한 財政收入의 전부 또는 일부를 自體確保할 수 있는 事務

②行政自治部長官은 企劃豫算處 및 해당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해당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중 責任運營機關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責任運營機關의 設置를 요청할 수 있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責任運營機關의 組織·운영·豫算·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과 다른 法律의 規定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第6條 (地方自治團體에의 責任運營機關 制度의 導入) 教育人的資源部長官,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의 취지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에 責任運營機關에 관한 制度를 導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第2章 責任運營機關의 長

第7條 (機關長의 採用) ①機關長은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公開募集 節次에 따라 行政이나 경영에 관한 知識·能力 또는 相關분야의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한다.

②機關長의 採用要件은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行政自治部長官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機關長의 採用期間은 3年の 범위내에서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정한다.

④機關長의 公開募集 및 採用節次와 採用契約의 내용, 採用契約의 解止事由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經歷職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長으로 採用되기 위하여 退職한 경우에 採用 期間이 만료되거나 採用契約이 解止된 때에는 退職시에 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우선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採用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 (機關長의 責務) 機關長은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체결한 採用契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機關運營의 公익성 및 효율성 향상, 財政의 經濟性 提高 및 서비스의 質的 改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 (機關長의 報酬) 機關長의 報酬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운영 및 評價

第10條 (基本運營規程) ①機關長은 法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責任運營機關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基本運營規程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基本運營規程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②基本運營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1. 所管業務 및 그 執行節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公務員의 定員運營에 관한 사항
3. 소속公務員의 人事運營에 관한 사항
4.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11條 (事業目標 및 事業運營計劃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속責任運營機關別로 財政의 經濟性 提高, 서비스 수준의 향상, 經營合理化등에 관한 事業目標을 정하여 이를 機關長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事業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事業運營計劃을 수립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運營計劃을 승인하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機關長은 事業運營計劃에 따라 年度別로 事業計劃을 수립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에는 責任運營機關이 달성할 구체적인 事業成果의 目標과 이를 객관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成果測定指標가 포함되어야 한다.

第12條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 ①責任運營機關의 事業成果의 評價 기타

責任運營機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소속하에 責任運營機關運營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會의 審議事項·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責任運營機關評價委員會) ①審議會의 評價結果, 責任運營機關의 存續여부 및 責任運營機關 관련制度의 개선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評價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責任運營機關評價委員會(이하 "委員長"라 한다)를 둔다.

②行政自治部長官은 委員會의 審議·評價結果를 토대로 企劃豫算處와 協議를 거쳐 責任運營機關으로의 存續여부등을 해당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委員會의 審議·評價事項, 구성·운영 및 評價對象機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評價結果의 반영) ①機關長은 責任運營機關에 대한 評價結果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行政自治部長官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責任運營機關에 대한 委員會 및 審議會의 評價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4章 組織 및 定員

第15條 (所屬機關 및 下部組織의 設置) ①責任運營機關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을 둘 수 있다.

②責任運營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下部組織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③삭제 <2002.3.25>

第16條 (公務員의 定員) ①責任運營機關에 두는 公務員의 總 定員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種類別·계급별 정원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運營機關의 種類別·계급별 정원을 정하거나 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計劃을 소속中央行政機關

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種類別·階級別 정원계획에 관하여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第17條 (契約職公務員의 活用) ①業務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責任運營 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所屬機關長·補助機關 및 補佐機關은 각각 契約 職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②責任運營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員의 일부를 契約職公 務員으로 採用할 수 있다.

第5章 人事管理

第18條 (任用權者)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및 第2項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소속責任運營機關 소속公務員에 대한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에 대한 任用權의 일부를 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9條 (任用試驗) ①責任運營機關 소속公務員의 任用試驗은 機關長이 실 시한다. 다만, 機關長이 單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中央行政機 關의 長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試驗實施機關의 長과 공동으로 실시 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다른 機關의 長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採用試驗을 실시하는 때에는 任用豫定職級·應試資格·選拔豫定人員· 試驗方法·時期 및 場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公告하여야 한 다. 다만, 經歷職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 외에는 競爭의 원칙에 違背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採用試驗의 公告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採用試驗에 應試하기 위한 學歷·經歷·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試驗科目 및 試驗方法에 관한 사항은 基本運營規 程으로 정한다.

④轉職試驗의 試驗科目·試驗方法 기타 轉職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第20條 (機關間 人事交流)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責任運營機關과 소속中央行政機關 및 그 所屬機關間 公務員의 轉補의 需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機關長과 協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責任運營機關 소속 經歷職公務員이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기 위하여는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人事關係法令이 정하는 特別採用試驗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職級은 해당 人事關係法令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다른 法律에 의하여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후 責任運營機關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된 者가 다시 다른 行政機關의 經歷職公務員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責任運營機關으로 轉補 또는 特別採用된 후 昇進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21條 (缺員補充) 責任運營機關 소속 經歷職公務員이 休職하거나 派遣된 경우에는 休職 또는 派遣期間동안 契約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第22條 (勤務實績의 評定) ①機關長은 定期 또는 수시로 소속 公務員의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評定하여 報酬決定 및 人事管理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등에 대한 評定要素·評定方法·評定期間 기타 必要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第23條 (昇進) ①階級間 昇進任用은 勤務實績 및 職務遂行能力등의 實證에 의한다.

②昇進所要最低年數 및 昇進의 제한을 제외한 昇進任用對象者의 決定方法에 관한 사항은 基本運營規程으로 정한다.

第24條 (特別採用에 대한 特例) 國家公務員法 第28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사유로 인한 責任運營機關 소속 公務員으로의 特別採用은 退職 당시 당해 責任運營機關에 在職하던 者에 한한다.

第25條 (賞與金の 지급) 機關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評

價結果에 따라 소속 機關別·下部組織別 또는 個人別로 賞與金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第26條 (國家公務員法등의 적용) 責任運營機關 所屬公務員의 人事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國家公務員法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을 적용한다.

第6章 豫算 및 會計

第27條 (特別會計의 設置) 責任運營機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둔다.

第28條 (計定の 구분) ①特別會計는 責任運營機關別로 計定을 구분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定の 명칭·내용 기타 計定の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特別會計의 豫算 및 決算은 責任運營機關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第29條 (特別會計의 運用·管理) 特別會計는 計定別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運用하고, 企劃豫算處長官이 이를 統合하여 관리한다.<개정 1999.5.24>

제29조의2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3.25]

第30條 (企業豫算會計法の 적용) ①責任運營機關의 사업은 企業豫算會計法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政府企業으로 본다.

②特別會計의 豫算 및 會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企業豫算會計法の 規定을 적용한다.

第31條 (豫算內容의 구분) 特別會計의 豫算內容중 企業豫算會計法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定損益計算書 및 資本計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門別로 구분할 수 있다.

第32條 (歲入과 歲出) ①特別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련 收入
2. 前年度 移越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費用負擔金
5. 一時借入金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收入金

②特別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經費
2. 施設·裝備등의 購入·設置·管理·運用에 필요한 經費
3. 一時借入金の 償還金 및 利子
4. 기타 支出金

第33條 (一般會社등으로부터의 轉入)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自體의 收入 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責任運營機關에 대하여는 審議會의 評價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常的 性格의 經費를 一般會計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運營計劃에 포함된 投資經費중 一般會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經費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常的 性格의 經費 외에 별도로 이를 一般會計 등에 計上하여 特別會計에 轉入할 수 있다.

第34條 (豫算案編成指針) 企劃豫算處는 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編成指針을 작성할 때에는 責任運營機關의 企業的 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1. 사업운영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기관
2. 재정수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기관

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第36條 (豫算의 移用·轉用)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豫算會計法 第36條 및 第37條와 企業豫算會計法 第2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豫算執行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別會計의 計定別 歲出 豫算의 각각의 總額 범위안에서 各 科目 상호간에 移用하거나 轉用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豫算을 移用 또는 轉用한 때에는 科目別 金額 및 이유를 명시한 明細書를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第37條 (豫算의 移越) ①特別會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會計年度 내에 支出하지 못한 經常的 性格의 經費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企業豫算會計法 第2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8條 (이익 및 損失의 처분) ①特別會計는 매 會計年度의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으로 積立하고 缺損이 생긴 경우에는 利益剩餘金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②決算의 결과 機關長의 經營能力에 依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審議會 또는 委員會가 인정한 利益金은 事業運營計劃期間중 당해計劃에 정하여진 用途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決算의 결과 생긴 缺損이 利益剩餘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移越缺損으로 정리한다.

第39條 (費用負擔)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政策的 目的 또는 公共目的을 위하여 責任運營機關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責任運營機關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料金 및 手數料를 減免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등 그 費用負擔의 원인을 제공한 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등이 責任運營機關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者로 하여금 그 費用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등이 부담하여야 할 費用은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당해地方自治團體·특정한 機關 또는 團體 등이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

附則 <제5711호,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章(第27條 내지 第39條) 및 附則 第2條 내지 第4條의 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第3條第1號를 削除하고, 同條第2號중 "一般會計"를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로 한다.

第4條第1號를 削除한다.

第5條의 題目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을 "一般會計등으로부터의 轉入"으로 하고, 同條중 "一般會計"를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로 한다.

第3條 (歲入·歲出 및 決算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正되는 特別會計(이하 "중전의 特別會計"라 한다)의 1999年度의 歲

入·歲出 및 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종전의 特別會計의 1999年度 決算上の 剩餘金은 2000年度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의 해당計定の 歲入에 移入한다.

第4條 (財産등의 承繼) 종전의 特別會計에 속하는 國有財産·物品 및 債權·債務는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의 해당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16>省略

<17>責任運營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 第35條第3項 및 第36條第2項중 "豫算廳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2項, 第13條第2項 및 第34條중 "企劃豫算委員會"를 각각 "企劃豫算處"으로 한다.

<18>乃至 <78>省略

第4條 乃至 第6條 省略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行政自治部長官, 教育部長官"을 "教育人的資源部長官,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5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666호,2002.3.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여 백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 7.29 대통령령 제16490호
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32호
개정 2000. 8.28 대통령령 제16957호
개정 2000. 8.28 대통령령 제16958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9호
개정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2001. 3.27 대통령령 제17170호
개정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3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9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2. 6.25 대통령령 제17637호
개정 2002. 9.11 대통령령 제17734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44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3. 2.24 대통령령 제17918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3.12. 3 대통령령 제181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3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 (기관장 채용계약) ①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 (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3장 운영 및 평가

제8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의 구성·운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 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 (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5]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제17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충남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제5장 인사관리

제18조 (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이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채용시험의 공고) ①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20조 (응시자격 등) ①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②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23조 (계정의 구분 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 중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 ②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재정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6.25]

제27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범위)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의 이월)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정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법 제37조제1항에서 "정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제29조 (비용부담)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 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6490호,1999.7.29>

-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2호,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7호,2000.8.28>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958호,2000.8.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 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제17069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 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제17170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47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부칙(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529호,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597호,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619호,2002.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제17637호,2002.6.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4호,2002.9.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84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918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0.8.28, 2000.12.30, 2001.3.27, 2001.12.31, 2002.3.2
2002.5.6, 2002.6.1, 2002.6.25, 2002.12.30, 2003.2.24, 2003.7.25, 2003.12.3>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명칭	소속	직 무	총정원의 한 도
국립영상 간행물 제작소	국정홍보처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채널프로그램 제작·방 송, 국정홍보간행물의 편집·제작·수집·배포 에 관한 사항	118인
중앙 보급창	조달청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품질관리 에 관한 사항	87인
충남통계 사무소	통계청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121인
국방 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에 관한 사항	162인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관 한 사항	1,036인
국제교육 진흥원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비유학생 지 도·관리에 관한 사항	69인
국립중앙 과학관	과학기술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관 한 사항	102인
항공 기상대	기상청	항공기상예보·특보생산 및 전국의 각 공항 기상대·공항기상관측소에 통보하여 발표하 는 업무에 관한 사항	97인
국립중앙 극장	문화관광부	민속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 한 사항	75인

명칭	소속	직 무	총정원의 한 도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농림부	수출입 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의 검역과 검사, 축산물에 대한 검사,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및 수의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	493인
국립식물 검역소	농림부	수출입 식물의 검역과 검사, 국내식물의 검사, 수출입 식물 및 국내식물의 검역 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01인
농업기계 화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113인
축산기술 연구소	농촌진흥청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 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유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환경개선연구 등에 관한 사항	334인
임업 연구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와 임업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임업단체의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14인
국립 의료원	보건복지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692인
국립 재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163인
국립목포 병원	보건복지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인

명칭	소속	직 무	총정원의 한 도
국립 지리원	건설교통부	국가 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세부도화, 위성영상등을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7인
대구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66인
수원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69인
전주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57인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정하는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95인
해양경찰 정비창	해양경찰청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인

[별표 2] <개정 2000.8.28, 2000.12.30, 2001.3.27, 2002.6.1, 2002.6.25, 2003.2.24>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관련)

책임운영기관	소 속 기 관	
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 소속)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운 전 면 허 시험관리단 (경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대구광역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인천광역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울산광역시	울산운전면허시험장
	경 기 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강 원 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원주운전면허시험장,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포항운전면허시험장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제 주 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책임운영기관	소 속 기 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 소속)	서울과학관
항공기상대 (기상청 소속)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소속)	서울지원, 부산지원, 인천지원, 군산지원, 제주지원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출장소
국립식물검역소 (농림부 소속)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 영남지소, 호남지소, 제주지소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소출장소
축산기술연구소 (농촌진흥청 소속)	대관령지소 및 남원지소
임업연구원 (산림청 소속)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건설교통부 소속)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건설교통부 소속)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소속)	보령수산기술관리소

[별표 3] <개정 2000.8.28, 2002.5.6, 2002.6.25>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관련)

기관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영상물 제작소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앙보급청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충남통계 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홍보원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제교육 진흥원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 과학관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3급 또는 3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기상대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 극장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식물 검역소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기관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농업기계화 연구소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축산기술 연구소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임업연구원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의료원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3급 또는 3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활원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목포병원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지리원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경찰 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별표 4] <개정 2000.8.28, 2002.5.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관련)

계정의 명칭	내 용
국립영상간행물제작계정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세입·세출
중앙보급창계정	중앙보급창의 세입·세출
충남통계사무소계정	충남통계사무소의 세입·세출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항공기상대계정	항공기상대의 세입·세출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계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세입·세출
국립식물검역소계정	국립식물검역소의 세입·세출
농업기계화연구계정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세입·세출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축산기술연구소의 세입·세출
임업연구원계정	임업연구원의 세입·세출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국립지리원계정	국립지리원의 세입·세출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계정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세입·세출
수원국도유지건설계정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세입·세출
전주국도유지건설계정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세입·세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해양경찰선박정비계정	해양경찰선박정비창의 세입·세출

여 백

대산지방해양수산청기본운영규정

여 백

대산지방해양수산청기본운영규정

제정 2001. 3. 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45호

개정 2002. 6.2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56호

개정 2002.12.3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58호

개정 2004. 2. 5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6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대산청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산청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2. “청장”이라 함은 장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산청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3. “보조기관 등”이라 함은 보조(좌)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인사관계법령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련법령과 이와 관련한 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5. “직제”라 함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말하며, “직제시행규칙”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말한다.

제5조(관할구역) 대산청과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의한다.

제 2 장 업무집행 절차

제6조(업무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① 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위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① 청장은 보조기관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등의 세부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정원

제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대산청에 총무과·선원선박과·항무과·해양환경과·항만공사과 및 수산관리과를 둔다.

② 청장은 보조기관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분장사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선원선박과장은 행정사무

관·수산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 수로사무관으로, 항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해양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항만공사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수산관리과장은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관리, 문서의 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관리·방호
4. 청내 용품 조달
5. 시험의 시행
6. 예산·결산 및 심사평가
7. 공사용 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8. 세입의 부과·징수(항만시설사용료·관유물대여료 및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제외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및 계약사무
9. 비상계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업무
10. 전산기기의 운영·관리와 전산업무개발
11.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선원선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및 지도
2. 해상운송사업 관계단체의 지도
3. 해상운임에 관한 사항
4. 항로의 개척·지도
5. 선박의 등록
6.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7. 선원보험 및 선원노동쟁의 조정
8. 선원의 복지

9. 선원근로감독
10. 선원 외국취업
11.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사항
12. 항만국통제에 관한 사항
13. 해상위험물컨테이너 점검에 관한 사항
14. 선박 안전시설의 검사·확인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등에 관한 사항
16.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8.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19.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20.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21. 항로표지의 설치·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22.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설계 및 시공감독
23.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운영
24.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폐지·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규신고(신규 항만·항로개설·항로변경 및 특수번호표지를 제외한다)
25.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사설항로표지 위탁 관리의 신고수리

⑥항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2.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4.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지도
5. 항만시설·장비등의 관리·운영
6. 선석 및 정박지의 관리·운영

7. 선박의 입·출항 신고
8. 도선사의 지도
9. 항만보안
10. 항만관제실의 관리·운영
11. 항만시설사용료 및 관유물대여료의 부과·징수

⑦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항 항만구역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무역항 항만구역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징수
3. 해역수질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오염관리해역의 관리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7. 해양시설의 관리
8.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육성·지원
10. 바다청소의 날 행사의 시행
11.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
12. 개항단속
13.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그 지도(항로표지용 선박을 제외한다)

⑧항만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감독과 준공확인
2. 항만공사용 기계·장비의 운용과 유지·수선
3. 항만시설의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업무
4.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6.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심사평가
7.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국가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8. 항만시설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9. 어항공사의 설계
10. 어항공사의 공사집행·시공감독 및 준공확인
11.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12. 어항시설의 피해복구공사

⑨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지도
2.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수산기술의 지도·교육
3. 기술지도선 및 어촌지도장비의 관리·운영
4.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
5.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6.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소속공무원의 정원) ① 대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청장은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한시적인 조직) ① 신규사업의 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한시적 조직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인사관리

제11조(인사관리 원칙) ① 청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직관리) ① 청장은 인사관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인사관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5급이하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 ① 대산청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7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고충심사
2. 7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 및 성과급 심사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소집은 청장이 하며, 회의 일시 및 내용 등을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3. 위원회 구성요건 및 결정은 인사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④ 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해양수산부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청장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5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인사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③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법령 등에 의하되, 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인사관계법령 등의 적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전직시험의 과목·방법 등)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8조(승진) ① 청장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배수 범위는 인사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능력·경력·인품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결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청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0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등을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실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실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5급이하·지도직 및 기능직 공무원 : 해양수산부인사관리규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2. 계약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산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평정시기) 근무실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계약직공무원 : 매년 12월말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23조(경력평정)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이하·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상여금 지급)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5%범위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8조(세입과 세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세입

1. 손익계정 : 전년도 이월금, 사업수입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기타 영업외수입
2. 자본계정 :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감가상각충당금, 당기순이익전입금, 차입금

② 세출

1. 손익계정 : 인건비, 기본사업비, 시범어장운영, 교육훈련, 전산운영, 정부부담금, 민간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 기관운영비
2. 자본계정 : 항만(어항)건설 및 유지보수, 표지시설과 항만교통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개량, 연안정비사업,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기타 자본적 지출

제29조(회계담당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회계직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회계검사 및 결산 등) 청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계검사, 자산평가(원가계산) 및 결산업무 등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① 기업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에 관한 서식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산청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3조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운영중인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1. 대산청 예규 제24호('99.5.6) 보통승진임용심의위원회규정
2. 대산청 예규 제25호('99.5.6) 포상업무규정
3. 대산청 예규 제30호('99.5.25) 회계직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정
4. 대산청 예규 제31호('99.6.23) 예산집행심의회규정
5. 대산청 예규 제36호('99.9.21) 사무분장규정
6. 대산청 예규 제40호('00.10.23) 위임전결규정

부 칙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후, 2002. 6.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02. 6. 26, 2004. 2. 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무원정원표(제9조의2제1항관련)

총 계	95
계약직 계	1
청 장	1
별정직 계	2
통계담당(7급상당)	1
통계담당(8급상당)	1
일반직 계	58
1급 내지 9급 소계	58
서기관·수산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	1
행정사무관·수산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 수로사무관	1
토목사무관	1
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화공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환경주사	1
수산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8
선박주사	2
수로주사	1

토목주사	3
건축주사	1
전무주사	2
행정주사보	4
행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선박주사보	3
수로주사보	1
토목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전무주사보	2
전송주사보	1
수산주사보 또는 어촌지도사	5
행정서기 또는 토목서기	1
수로서기	1
토목서기	1
전무서기	2
수산서기 또는 어촌지도사	3
전무서기보	1

기능직 계	34
기능6급 선장	2
기능6급 기관장	1
기능6급 등대장	2
기능7급 선장	2
기능7급 기관장	3
기능7급 등대장	1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선원	1
기능8급 기관원	1
기능8급 등대원	1
기능9급 토목원	1
기능9급 통신원	2
기능9급 선원	1
기능9급 등대원	2
기능10급 난방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기관원	1
기능10급 사무원	8
기능10급 방호원	1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여 백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전문개정 1983.3.16 대통령령 제11074호 행정자치부]

[일부개정 2002.4.18 대통령령 제17581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계약직공무원 규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별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 1개에 대체할 수 있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2개 이내로 한다. <신설 2002.4.18>

③개방형직위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4.18>

제3조 (충원시기) ①소속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법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에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하거나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8>

③소속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타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기타 인사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제4조 (선발시험) ①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8>

③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4일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및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의 규정은 공고내용·변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4.18>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험일 10일전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의 공고를 1회 이상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시험방법·시험과목·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4.18>

⑦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4.18>

제4조의2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시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학계·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개방형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8]

제5조 (선발시험위원회) ①소속장관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시험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은 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2.4.18>

제6조 (임용절차)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임용방법 등) 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은 법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으로 같음하고,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4조의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으로 같음한다.

제8조 (공개모집의 예외) 소속장관은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제9조 (임용기간) ①개방형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계약직공무원규정을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소속장관은 개방형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제10조 (임용기간 만료자의 특별채용 등) ①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당시의 원소속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당해 공무원을 개방형임용당시의 직급(승진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개방형임용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장관은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제11조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개방형임용된 자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개방형임용된 자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임용된 자를 당해 개방형직위가 있는 기관의 소속장관이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4.18>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개방형임용된 자를 전보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8>

제12조 (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의 지정 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법률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근무성적평정) 개방형임용된 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 또는 위탁하여 일정기간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개방형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16조 (직무분석의 실시 등) 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개방형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16726호,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부칙 <제17581호,2002.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임용되어 재직중인 자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당시에 소속장관이 정한 기간으로 하되,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제외하고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규정

여 백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 2002.7.13 대통령령 제17669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③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

[전문개정 2000.4.18]

제3조 (채용자격) ①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7.13>

[전문개정 2000.4.18]

제4조 (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13]

제5조 (채용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2.28, 1999.3.31>

②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8, 2000·4·18>

③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정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④각 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도 그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미리 채용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7.13>

제6조 (채용기간) ①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2.28>

②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4.18>

③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0.4.18>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2.7.13>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8조 (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제9조 (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2.7.13]

제9조의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3 (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10조 (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18]

제11조 (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4.18]

제12조 (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2.28>

부칙 <제12254호,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560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부칙 <제16784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 공무원중 일반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자의 채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징계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669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별표 1] <개정 2000.4.18, 2002.7.13>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5.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자격이 있는 자 6. 공인회계사·변리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의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6.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자 격 기 준
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삭제 <2000.4.18>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비고 : 위표의 가의 제9호, 나의 제7호, 다의 제5호, 라의 제6호 및 마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2] <신설 2002.7.13>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의2제2항관련)

1. 휴가의 종류 등

- 가.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휴가기간중의 근무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휴가기간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마. 휴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가

- 가.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text{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4\text{시간}} \times 8$$

- 나.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 다. 제3호 가목에 의한 병가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중에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 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일수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당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주당 총근무시간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참·조퇴 및 외출의 합산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60\text{일} \times \frac{\quad}{\quad}$$

44시간

나.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및 특별휴가

가. 공가·경조사휴가·출산휴가·여성보건휴가·포상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여 백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여 백

해양사고의調查및審判에관한法律(拔萃)

제정 1971·1·22 法律第2306號

改正 1973·3·5 法律第2582號

1975·12·31 法律第2876號

1983·12·31 法律第3715號(船舶職員法)

1987·11·28 法律第3951號

1991·12·14 法律第4423號(非訟事件節次法)

1996·8·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

1999·2·5 法律第5809號

第 1 章 總 則

第1條 ~ 第2條 (생략)

第3條(審判院의 設置) 海洋事故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所 屬下에 海洋安全審判院(이하 "審判院"이라 한다)을 둔다.<改正 96·8·8, 99·2·5>

第4條 ~ 第7條의3 (생략)

第 2 章 審判院의 組織

第8條(審判院의 組織) ①審判院은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이하 "中央審判院"이라 한다)과 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하 "地方審判院"이라 한다)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9·2·5>

②各級 審判院에 院長 1人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數의 審判官을 둔다. <改正 87·11·28>

③中央審判院의 組織과 地方審判院의 名稱·組織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第9條(中央審判院長 및 地方審判院長) ①中央審判院에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中央審判院長"이라 한다)을, 地方審判院에 地方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地方審判院長"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99·2·5>

②中央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2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海洋水産

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③地方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3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審判官중에서 海洋水產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全文改正 87·11·28]

第9條의2(審判官의 任命 및 資格) ①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은 中央審判院長의 추천과 海洋水產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2. 2級이상의 航海士·機關士 또는 運航士의 海技士免許(이하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라 한다)를 받은 者로서 4級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3. 海洋水產行政에 3級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4年이상인 者

③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遠洋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의 船長 또는 機關長으로 3年이상 乘船한 者
2.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5級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3.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教育機關에서 船舶의 運航 또는 船舶用機關의 運轉에 관한 科目을 3年이상 教授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3年이상인 者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全文改正 99·2·5]

第10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審判院長 또는 審判官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4.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는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懲戒處분에 의하여 罷免된 경우에는 그 罷免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11條(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職務) ①中央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改正 75·12·31>

1. 中央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2. 中央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官중에서 審判長을 指名한다. 다만, 특히 重要な 事件에 대하여는 스스로 審判長이 될 수 있다.
3.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4.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에 缺員이 있거나 기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은 地方審判院長으로,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은 다른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으로 하여금 審判官의 職務를 行하게 할 수 있다.

②地方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當該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2. 當該 地方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長이 된다.

③審判官은 審判職務에 從事한다.

④審判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審判院의 審判官중 先任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審判業務 외의 業務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首席調査官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2·5>

第12條(審判職務의 獨立) 審判長과 審判官은 獨立하여 審判職務를 行한다.

第13條(審判官의 身分 및 任期) ①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別定職 公務員으로 한다.

②審判院長과 審判官의 任期는 3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改正 73·3·5>

③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減俸 其他 不利益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④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勤務上限年齡은 國家公務員法 第74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一般職公務員"은 "一般職公務員에 相當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 "5級"은 "5級상당"으로, "6級"은 "6級상당"으로 본다. <新設 73·3·5> <改正 99·2·5>

第13條의2(審判官의 轉補) 海洋水産部長官은 審判業務 遂行上 不得已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13條第2項의 任期중인 地方審判院長 또는 各級審判院의 審判官을 다른 審判院의 그 해당하는 職級에 轉補를 할 수 있다. <改正 96·8·8>

[本條新設 75·12·31]

第14條(非常任審判官) ①各級審判院에 非常任審判官을 두고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 中에서 各級審判院長이 이를 委囑한다. <改正 99·2·5>

②非常任審判官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이 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한다. <改正 99·2·5>

③審判에 參與하는 非常任審判官의 職務 및 權限은 審判官과 같다. <改正 99·2·5>

④各級 審判院에 두는 非常任審判官의 數·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5>

第15條(審判官, 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 ①審判官(審判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非常任審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改正 87·11·28, 99·2·5>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海洋事故關聯者의 親族·戶主·家族 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證言 또는 鑑定을 한 경우
3.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辯論人 또는 代理人으로서 審判에 關與한 경우
4.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調査官의 職務를 行한 경우
5.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前項의 審判에 關與한 경우
6.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審判對象이 된 船舶의 所有者·管理人이나 賃借人인 경우

②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및 審判辯論人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審判官과 非常任審判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第1項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不公平한 審判을 할 憂慮가 있는 경우
- ③審判廷에서 당해 事件에 대하여 이미 陳述을 한 者는 第2項第2號의 事由만을 理由로 하여 忌避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 다만, 忌避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忌避의 事由가 그후 發生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審判官·非常任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回避할 수 있다. <改正 99·2·5>

⑤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에 대한 決定은 당해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所屬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한다. 다만, 特別審判部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別審判部가 구성된 地方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決定한다. <改正 87·11·28, 99·2·5>

第16條(調査官등) ①各級審判院에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을 둔다.

②第1項의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은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87·11·28]

第16條의2(調査官의 資格) 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이 될 수 있는 者는 第9條의2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다만, 地方審判院의 調査官의 資格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87·11·28]

第17條(調査官의 職務) 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은 海洋事故의 調査, 審判의 請求, 裁決의 執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務를 담당한다.

[全文改正 99·2·5]

第18條(調査官 同一體의 原則) ①調査官은 그 事務에 관한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②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으로 하여금 그 權限에 속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③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調査官으로 하여금 處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第18條의2(中央首席調査官의 指揮·감독) ①中央審判院의 首席調査官(이하 "中央首席調査官"이라 한다)은 일반적 調査事務의 最高監督者로서 모든 調査官을 指揮·감독하고, 구체적인 事件에 대하여는 中央審判院의 調査官과 地方審判院의 首席調査官(이하 "地方首席調査官"이라 한다)을 指揮·감독한다.

② 削除 <99·2·5>

第18條의3(特別調査部の 구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第22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로서 특별한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事故를 調査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 特別調査部를 구성할 수 있다.

1. 調査官(首席調査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海洋事故와 관련된 關係機關의 公務員
3. 海洋事故의 關聯專門家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査部の 人員은 10人이내로 하되, 特別調査部の 長은 調査官중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지명하는 者로 한다.

③特別調査部는 調査가 종료된 후 10日이내에 調査報告書を 작성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5]

第19條(調査官의 一般事務의 指揮監督) 審判院長은 調査官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이 경우 調査官의 固有事務에 關與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20條 削除 <99·2·5>

第20條의2(審判官 및 調査官등의 研修教育) 中央審判院長은 審判官·調査官 및 기타 職員の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研修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6·8·8>

[本條新設 87·11·28]

第21條(審級) 地方審判院은 第1審 審判을 行하고, 中央審判院은 第2審 審判을 行한다.

第22條(審判部の 構成 및 議決) ①地方審判院은 審判官 3人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에 관하여는 1人の 審判官이 審判을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②中央審判院은 審判官 5人이상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 <改正 99·2·5>

③各級審判院은 第14條第2項에 規定하는 事件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院長이 指名하는 非常任審判官 2人을 참여시켜야 한다. <改正 75·12·31, 99·2·5>

④合議體審判部는 合議體를 구성하는 審判官(審判長 및 非常任審判官을 포함한다)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9·2·5>

第22條의2(特別審判部の 구성) ①中央審判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중 그 原因糾明에 있어 高度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件을 管轄하는 地方審判院에 特別審判部를 구성할 수 있다. <改正 99·2·5>

1. 10人 이상이 死傷한 海洋事故

2. 船舶 기타 施設의 被害가 현저히 큰 海洋事故

3. 기름등의 流出로 심각한 海洋汚染을 일으킨 海洋事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審判部는 당해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 專門知識을 가진 審判官 2人과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長으로 구성하되, 地方審判院長이 審判長이 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87·11·28]

第23條(審判部の 職員) ①審判부에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을 둔다.

②書記는 審判에 列席하며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書類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다.

③審判廷警衛는 審判長의 명을 받아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담당한다.

④審判補助職員은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證據調査 및 書記業務를 제외한 審判補助業務를 담당한다.

⑤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院長이 그 所屬職員중에서 지명 또는 任命한다.

[全文改正 99·2·5]

第2章의2 審判院의 管轄

第24條(管轄) ①審判에 부칠 事件의 管轄權은 海洋事故가 發生한 地點을 管轄하는 地方審判院에 속한다. 다만, 海洋事故 發生地點이 分明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海洋事故와 관련된 船舶의 船籍港을 管轄하는 審判院에 속한다. <改正 99·2·5>

②同一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 審判請求를 받은 地方審判院에서 審判한다.

③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 審判請求를 받은 地方審判院이 併合하여 審判한다.

④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은 이를 併合하여 審判한다.

⑤國外에서 發生한 事件의 管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第25條 ~ 第39條의2 (생략)

第3章 ~ 第11章 (생략)

附則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하지 아니하는 期間內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1971·6·28 대통령령 제5686호에 의하여 1971·6·28부터 시행]

②(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海難審判委員會에 從事하는 海難審判委員長·委員은 이 법에 의한 海難審判院長과 審判官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則 <73·3·5> (생략)

附則 <75·12·31> (생략)

附則 <83·12·31> (생략)

附則 <87·11·28> (생략)

附則 <91·12·14> (생략)

附則 <96·8·8> (생략)

附則 <99·2·5> (생략)

여 백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여 백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발췌)

제정 1971. 6.28 대통령령제5686호
개정 1977. 3. 8 대통령령제8478호
1978. 4.27 대통령령제8991호
1982.12.31 대통령령제11022호
1985. 8.31 대통령령제11756호
1988. 4.20 대통령령제12434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 8.23 대통령령제1654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생 략)

제2조(심판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99·8·23>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8·4·20, 99·8·23>

③삭제 <82·12·31>

제3조 ~ 제7조의3 (생 략)

제2장 비상임심판관

제8조(정원) 각급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99.8.23>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3장 (생 략)

제3장의2 조사관

제17조의2 (생략)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8·23]

제4장 ~ 제7장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시행일)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시행일을 이 영의 시행일로 한다.

부칙 <77·3·8> (생략)

부칙 <78·4·27> (생략)

부칙 <82·12·31> (생략)

부칙 <85·8·31> (생략)

부칙 <88·4·20> (생략)

부칙 <94·12·23> (생략)

부칙 <96·8·8> (생략)

부칙 <98·7·1> (생략)

부칙 <98·9·17> (생략)

부칙 <99·8·23> (생략)

[별표 1] <개정 88·4·20, 99·8·23>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제2조제2항관련)

명칭	위치	관할	
		관할구역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
동해지방 해양안전 심판원	동해시	1.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안 경계(북위 35도 38분 55초·동경 129도 27분 08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일본국 효오고곶의 해안까 지 그은 선(이하 "가선"이라 한다) 이북의 영해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강원도 5. 경상북도(가선 이남의 구역을 제 외한다)	1. 가선 이북의 한반도해안과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의 시베리아의 해안, 가선, 가선 이동의 일본국 혼슈의 서부와 북부해안, 혼슈 동 북단의 시리야사끼(북위 41도 25 분 45초·동경 141도 28분 00초) 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동경 150도 의 자오선까지 그은선(이하 "나선 "이라 한다) 및 나선의 동단으로 부터 자오선을 따라 북으로 시베 리아해안까지 그은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 생한 사건 2. 동은 서경 120도, 서는 동경 150 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부산지방 해양안전 심판원	부산 광 역시	1. 북은 가선, 서는 섬진강하구의 강중심(북위 34도 58분 18초·동 경 127도 45분 57초)에서 경상남 도 하동군 길전면 마도 북서단(북 위 34도 56분 15초·동경 127도 46분 41초), 같은 면 소마도 서남 단(북위 34도 55분 54초·동경 127도 47분 00초), 같은 도 남해군 고현면 외난조도 북단(북위 34도 54분 40초·동경 127도 49분 05 초), 같은 면 외난조도 남단(북위 34도 54분 35초·동경 127도 49분 08초), 같은 면 송도 남동단(북위 34도 52분 53초·동경 127도 49분 12초) 및 같은 군 서면 노구리 서 북의 북위 34도 52분 17초·동경	1. 가선으로부터 다선까지 한반도 해안, 가선, 가선 이남의 일본국 혼슈의 서부 및 남부해안과 혼슈 의 동부해안, 나선, 나선의 동단으 로 부터 동경 150도의 자오선을 따라 남으로 북위 32도까지 그은 선,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 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및 라선의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 그은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 인 수역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 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2. 동은 동경 060도, 서는 서경 030 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p>127도 49분 13초까지 그은 선(이하 "다선"이라 한다), 다선의 남단으로부터 같은 면 남상리의 남쪽 서단(북위 34도 51분 02초·동경 127도 48분 36초)까지의 해안, 같은 면 남상리의 남쪽 서단에서 북위 34도 45분 00초·동경 127도 50분 00초, 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8도 00분 00초를 지나 북위 32도 00분 00초·동경 128도 00분 00초까지 그은 선(이하 "라선"이라 한다) 이내의 영해</p> <p>2. 부산광역시</p> <p>3. 울산광역시</p> <p>4. 경상남도(다선 및 라선 이동의 구역을 제외한다)</p>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라남도 목포시	<p>1. 동은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해안, 라선 및 북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의 해안 경계(북위 35도 25분 35초·동경 126도 27분 00초)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동경 126도 26분 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마선"이라 한다)이내의 영해</p> <p>2. 전라남도(마선 이북의 지역을 제외한다)</p> <p>3. 제주도</p>	<p>1. 다선, 다선과 라선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다선과 마선 사이의 한반도해안, 마선, 라선의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바선"이라 한다) 및 마선과 바선 사이의 중국해안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p> <p>2. 동은 서경 030도, 서는 서경 12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p>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광역시	<p>1. 마선 이북의 영해</p> <p>2. 전라북도</p> <p>3. 충청남도</p> <p>4. 경기도</p> <p>5. 인천광역시</p> <p>6. 황해도</p> <p>7. 평안남도</p> <p>8. 평안북도</p> <p>9. 서울특별시</p> <p>10. 충청북도</p>	<p>1. 마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마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p> <p>2.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0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한다)</p>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여 백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전문개정 1984. 8. 9 대통령령 제11484호
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25호
1994. 1.17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5. 4.12 대통령령 제14620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035호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1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1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 7.13 대통령령 제1766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17>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 (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개정 1990·12·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2·28>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19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정원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직제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이하 "과단위 기구"라 한다)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시행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단위 기구와 그 분장업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8·2·28]

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①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조정 또는 통제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②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 5급이상의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제7조 삭제<1990·12·31>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17, 1998·2·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중에 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17, 1995·4·12, 1998·2·28>

⑤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 없이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17, 1998·2·28>

⑥직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8]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9조의2 삭제<1998·2·28>

제10조 (직제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한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 직제 등의 안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3.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소요정원설명서
5. 업무처리과정표
6. 1인당 업무량 산출표
7.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8. 1년간의 소요예산과 그 내역
9. 자체조직진단의 결과 및 향후 조직운영의 방향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 (차관보) ①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 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②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제12조 (담당관의 설치) ①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개정 1995·4·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과를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③삭제<1999.5.24>

제13조 (총무과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는 기관내의 지원업무와 실·국 또는 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2.28, 2002.3.2>

제14조 (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당해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 행정능률향상과 비상대비를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8·2·28>

②기획관리실을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에는 기획관리관을 둘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5조 (국과 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에 3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업무의 특수성으로 국의 설치가 부적당한 중앙행정기관에는 국에 준하는 보조기관으로 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기획관리실외의 실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기획관리실외의 실은 국 또는 부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과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과를 두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 또는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에 적어도 12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팀·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99.5.24>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⑤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 및 담당관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4급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둘 수 없다.<개정 1994·1·17>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 및 담당관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4급이하인 경우에는 부를 둘 수 없다.<개정 1994·1·17>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17, 1998·2·2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내용이 다수기관에 관련되어 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관련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2·28>

③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98·2·28>

④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8·2·28>

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외에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8·2·28>

제22조 삭제<1998·2·28>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 (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8·2·28>

제23조의2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신설 1995·4·12>

[본조신설 1994·1·17]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직급별로 배정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하위직급을 말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7.13>

④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2급·3급 국가공무원정원의 운용)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과의 2급 및 3급공무원의 정원의 운용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불구하고 동일직렬의 직급별 전체정원의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3급직위에 중앙행정기관의 2급의 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개정 1996·6·29, 1998·2·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1994·1·17, 1996·6·29, 1998·2·28>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경찰공무원의 경사·경장·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소방교·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5·4·12]

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별·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17, 1996·6·29>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6·6·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27조의2 (조직진단)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

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 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4·1·17]

제28조 (정원감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8]

부칙 <제11484호,1984.8.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4102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1> 생략

<272>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3>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620호,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5호,19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1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105>생략

<106>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09>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팀·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생략

부칙 <제17534호,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칙(계약직공무원) <제17669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여 백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5호

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정원) 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27만3,982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 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한 정원중 교원의 정원

제3조 (정원감축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의 민간·지방이양, 행정기관의 축소·정비 등 정원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별 업무처리체계

를 재검토하여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5월말까지 3년간의 총정원의 감축규모를 정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당해 기관의 정원 감축규모에 따라 연도별·직급별·기관별 감축정원을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정원을 토대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99·5·2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 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정원대장

여 백

해양수산부 정원

과 별	계	정 무 직	별정직	계 약 직	일 반 직											연구직	기능직
					계	1급	2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4,072	2	45	1	2,282	1	2 (16)	6 (15)	72	67	359	832	582	312	18	298	1,444
본 부	490	2	1급1, 2급1 5급1, 6급2 7급1, 9급1		408	1	(9)	1 (12)	27	48	127	167	16			연구사 1	72 (8급1, 9급15, 10급56)
국립수산 과 학 원	645				127		(3)	1	5	1	20	45	34	17	1	297 (연구관 96, 연구사201)	221 (6급10, 7급24, 8급16, 9급36, 10급135)
국립해양 조 사 원	220				121		(1)	(1)	4	5	14	47	36	13		※ 연구관 1급 1 2·3급 3 3급 1 4급 24 5급 67	99 (6급13, 7급13, 8급23, 9급23, 10급27)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202				170		(1)		4	1	19	53	55	37			32 (9급1, 10급31)
지도선관 리 사무소	524				245				2	2	26	79	72	64			279 (6급38, 7급29, 8급39, 9급35, 10급138)
지방해양 수 산 청 (대산제외)	1,818		7급6 8급13		1,108		2 (1)	4 (2)	25	9	138	403	340	168	16		691 (6급125, 7급117, 8급133, 9급101, 10급215)
해양안전 심 판 원	78		1급1 2급8 4급8		45		(1)		4	1	10	14	10	5			16 (9급1, 10급15)
대산지방 해 양 청	95		7급1 8급1	1	58				1		5	24	19	8	1		34 (6급5, 7급6, 8급4, 9급6, 10급13)

※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계방형) : 항만국장, 국제협력관, 과학원장, 과학원 해양환경부장, 수검원장,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장, 과학원 생명공학연구단장(7직위)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6조 및 동시행규칙 제37조)

본부 정원

과 별	계	정무직	별정직		일									연 구 직	기 능 직
			계		계	1급	2·3급	3급(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합 계	490	2	7	7	408	1	9	1 (12)	27	48	127	167	16	1	72
장 관 실	8	1(장관)	1	비서6급	4		행정·별정 1		행정·별정 2		행정·별정1				10급사무2
차 관 실	4	1(차관)	1	비서9급	1						행정1				10급사무1
차 관 보	2		1	별정1급											10급사무1
공 보 관	8				5		행·수·선·시·별 1			행·수·선·시 1	행·수·선·토 1	행·수·선·토 2			10급사무3
감 사 관	14				13		행·수·선·시 1		행·수·선·시 1	행정1	행·선 1, 행·수·선 1, 토목 1	행 3, 행·진산 1, 수산 1, 선박 1, 토목 1			10급사무1
총 무 과	40				20			(행·수·선·시 1)		행·수·선·시·토 3	행·수·선·토 1	행·수·선·토 14, 통신 1			8급방호1,9급교환1,9급운전3,9급사무1,9급방호2,10급방호2,10급교환1,10급운전2,10급사무원7
안전관리관	57				52		1	(2)	2	7	16	21	3		5
안전정책담당관	17				15		행·공·수·선·수로·시 1	(행·공·수·선·수로·시 1)		행·공·선·조 3	행·조·선 3	행·조·선 6	행·조·선 1		10급사무2
해사기술담당관	14				13			(행·공·수·선·수로·시 1)		행·공·선·조 2	행·조·선 4	행·조·선 5	행·조·선 1		10급사무1
해양방재담당관	15				14				행·공·수·선·수로·시·정보통신 1	행·공·수·선·정통·조선·전무·통신 1	행·조·선 1 행·수·조·선·전무·통신 5	행·수·조·선·전무·통신 5	행·수·조·선·전무·통신 1		10급사무1
항로표지담당관	11				10				행·공·수·선·수로·시·정보통신 1	행·공·수로·시·정통·전기·전무·통신·건축 1	행·수로·건축·전기·전무·통신 3	행·수로·건축·전기·전무·통신 5			10급사무1
국제협력관	32				28			1	3	1	11	10	2	1	3
국제협력담당관	13				11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수연·지 5	행·수·수연·지 3	행·수·수연·지 1	수연 1 10급사무1
무역진흥담당관	11				10				행·수·선·시·지 1			행·수·지 4	행·수·지 4	행·수·지 1	10급사무1
원앙어업담당관	8				7				행·수·선·시·수연·지 1	행·공·수·조·수연·지 1	행·수·조·수연·지 2	행·수·조·수연·지 3			10급사무1

과 별	개	정무직	별정직		일							기 능 직	
			개	계	1급	2·3급	3급(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획관리실	57		3	43	1		(1)	3	3	16	17	2	11
혁신담당관	10			8	관리관1		(행·수·선·시·1)		행·수·선·시·토 1	행·수·선·토 2, 행정·수·선·토·사서 1	행·수·선·토·사서 2		9급사무 1, 10급사무1
기획예산담당관	16			13				행·수·선·시 1	행·수·선·시·토 1	행·수·선·토 4	행·수·선·토 6	행·수·선·토 1	10급사무 3
행정법무담당관	8			7				행·수·선·시 1		행·수·선·토 3	행·수·선·토 2 행·수·선·토·사서 1		10급사무 1
정보화담당관	17			13				행·수·선·시·전산 1	행정·전산 1	행·전산 2 행정·수·선·토·사서 1 행·전산·사서·별정 2	행·전산 6		10급사무 4
비상계획관	6	3	2급1, 5급1, 6급1	2						행정·선박 1		행정 1	10급사무1
해양정책국	57			51	1	(1)	4	9	14	20	2	6	
해양정책과	15			13	행·수·환·선·시·수연 1	(행·공·수·선·시 1)		행정 3	행정 1, 행정·자원·수산 1, 행정·수산 1	행정 4	행정·수산 1	9급사무1, 10급사무1	
해양개발과	12			11			행·공·수·선·수로·시·수연 1	행·공·수·시·자원·토·건·전기·기계·수연 2	행·수·자원·선·수로·토·건·기·전기·수연 3	행·수·자원·선·수로·토·건·기·전기·수연 5		10급사무1	
해양환경과	10			9	행·공·수·환·선·시·전산·수연 1		행·공·수·환·선·전산·항공·수연 2	행·공·수·환·선·전산·항공·수연 1	행·수·환·항공·선·전산·수연 2	행·수·환·항공·선·전산·수연 3	행·수·환·항공·선·전산·수연 1	10급사무1	
해양보전과	10			9	행·공·수·환·선·시·수연 1		행·공·수·환·선·항공·수연 1	행·공·수·환·선·수로·시·전산·항공·토 1	행·수·환·항공·선·수연 3	행·수·환·항공·선·수연 4		10급사무1	
연안계획과	10			9	행·공·수·환·선·시·전산 1		행·공·수·환·수로·시·전산·항공·토 1	행·수·환·항공·수로·전산·토 3	행·수·환·항공·수로·전산·토 4			10급사무1	
해운물류국	49			44	1	(2)	3	7	13	18		5	
해운정책과	12			11	행·수·선·시·정통 1	(행·수·선·시 1)		행정 1	행정 3, 행정·선박 1	행정 3, 행정·선박 1		9급사무1	
연안해운과	8			7			행·수·선·시 1	행정·선박 1	행정 1, 행·선 1	행정 2, 선박 1		10급사무1	
선원노정과	9			8			행·수·선·시 1	행정 2	행정·선박 1, 행정·수산 1	행정 2, 행정·선박 1		10급사무1	
항만물류과	8			7			행·수·선·시·전산 1	행정 1,	행정 2, 행·선·전산·조·전산·전무·통신·항공 1	행정 1, 행·선·항공·전산·전무·통신·전송 1		10급사무1	
항만운영과	12			11		(행·공·수·선·시·정통 1)		행·공·선·전산·정통·조·전산·전무·통신·항공 2	행정 1, 행·선·전산·조·전산·전무·통신·항공 1	행정 1, 행·선·항공·전산·전무·통신·전송 5		10급사무1	

과 별	계	정무직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계		계	1급	2·3급	3급(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항 만 국	56				50		1	(2)	3	7	16	20	1	6
항만정책과	14				12		행·공·수·선·시 1	(행·공·수·선·시 1)		행정·토목 1, 시설 1	행정 1, 행정·토목 1, 토목 1	행정 2, 토목 3		9급사무2
항만건설과	10				9				행·공·수·선·시 1	행·공·시·토·건·기·전기 1	행·토·건·기·전기 3	행·토·건·기·전기 4		10급사무1
항만개발과	10				9				행·공·수·선·시 1	행·공·수·시·토·건·기·전기 1	행·수·토·건·기·전기 3 행·토·건·기·전기 1	행·토·건·기·전기 3		10급사무1
민자계획과	12				11			(행·공·수·선·시 1)		행·공·시·토·건·기·전기 2	행·토·건·기·전기 3	행·토·건·기·전기 4	행·토·건·기·전기 1	9급사무1
기술안전과	10				9				행·공·수·선·시 1	행·공·시·토·건·기·전기 1	행·토·건·기·전기 3	행·토·건·기·전기 4		10급사무1
수산정책과	51		1	1	45		1	(2)	2	5	14	18	3	5
수산정책과	13				11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선·시·지 1)		행·수·지 1	행·수·지 3	행·수·지 4	행·수·지 1	9급사무1, 10급사무1
유통가공과	13				12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수연·지 1	행·수·수연·지 4	행·수·수연·지 5	행·수·수연·지 1	10급사무1
어촌어항과	13				12				행·수·선·시·지 1		행·수·토·건·지 5	행·수·토·건·지 5	행·수·토·건·지 1	10급사무1
수산경영과	12		1	7급1	10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수연·지 2 행·수·지 1	행·수·수연·지 1 행·수·지 1	행·수·수연·지 3 행·수·지 1		10급사무1
어업지원과	55				52		1	(1)	4	4	20	19	3	3
어업정책과	14				13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선·시·수연·지 1)		행·수·수연·지 1	행·수·수연·지 4	행·수·수연·지 3 행·수·전산·전무·수연·지 1	행·수·수연·지 2	9급사무1
어업교섭과	8				8				행·공·수·선·시·정통·지 1		행·수·지 1 행·수·조·선·전무·지 3	행·수·지 1 행·수·조·선·전무·지 2		
어업지도과	11				10				행·공·수·선·시·정통·지 1		행·수·지 1 행·수·조·선·전무·지 4	행·수·지 1 행·수·조·선·전무·지 3		10급사무1
양식개발과	12				11				행·수·환·선·시·수연·지 1	행·수·환·수연·지 2	행·수·환·수연·지 3	행·수·환·수연·지 5		10급사무1
자원관리과	10				10				행·수·선·시·전산·정통·수연·지 1	행·수·선·전산·정통·전무·수연·지 1	행·수·수연·지 1 행·수·선·전산·전무·수연·지 3	행·수·전산·전무·수연·지 3	행·수·전산·전무·수연·지 1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과 별	계	인 반 직											연구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연구관	연구사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645	127	3	1		5	1	20	45	34	17	1	297	96	201	221	10	24	16	36	135
본 원	282	76		1		3	1	17	29	17	7	1	112	44	68	94	2	13	10	17	52
총무과	40	15				행정1	행정1	행정 2	행정 6, 환경 1	행정 4			1	수연 1		24		전기2, 기계2, 전화수 리1	건축1, 기계1	운전1, 사무1, 방호1	교환2, 기계1 운전3, 농림1 사무3, 방호4
연구기획실	104	45			1			8	16	12	7	1	10	4	6	49	2	8	7	13	19
연구관리과	25	12						전산·별 1 수산·지 1	수산 1, 전산 1, 전·별 2 수·지 1	전산 1 전·별 4			10	수연 4	수연 6	3					기계 1 사무 2
행정예산과	79	33				행·수 ·수연 ·지 1		행정 1, 행·사서 1, 수·조·선· 전무 1, 수·선 2, 수·지 1	행정1, 행·사서 1, 조·선 1, 선박3, 전무3, 수·지 2	선박 5 전무 2	수산 2 선박 4 전무 1	전무1				46	선장 1 기관 1	선장 7 기관 1	통신원 2 선장 1 선원 1 기관장 1 기관원 2	통신원 2 선원 7 기관원 2 위생원 1 사무원 1	선원 11 기관원 3 위생원 1 사무원 1
어업자원부	37												31	12	19	6			1		5
자원연구팀	16												13	수연 5	수연 8	3					사무 3
해외자원팀	9												8	수연 3	수연 5	1					사무 1
수산공학팀	12												10	수연 4	수연 6	2			전기 1		사무 1
양식과학부	33												27	11	16	6					6
양식관리팀	11												7	수연 4	수연 3	4					전기1, 사무3
병리연구팀	10												9	수연 3	수연 6	1					사무 1
식품위생팀	12												11	수연 4	수연 7	1					사무 1
해양환경부	31												28	11	17	3					3
환경관리팀	14												13	수연·환연 2 수연 3	수연 5 수연·환연 3	1					사무 1
해양연구팀	9												8	수연·환연 1 수연 2	수연 5	1					사무 1
유해생물팀	8												7	수연·환연 1 수연 2	수연 4	1					사무 1

과 별	계	일 반 직										연구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연구관	연구사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연수부(교학과)	21	16		행·수·선· 시·수료·수 연·지 1		행·수·선· 시·수로· 지 1		행정 2 수·지 4 선·수·토·조 1	행정 4 수·지 2	수산 1					5					사무 1	기계 1, 사무 3
생명공학연구원	16											15	수연 5	수연 10	1						사무 1
수산연구소	298	41	3			1		3	12	13	9	148	40	108	109	8	11	5	17		68
동 해	93	13	1					1	4	4	3	44	13	31	36	3	3	2	4		24
관리과	23	10	수· 수연 1					행·수 1	행정 1 수·지 1 선박 2	행정 1 선박 1	선박 2				13	선장 1, 기관장 1 통신장 1	선장 1	기관원 1			전기 1, 운전 1, 선원 2, 기관원 1, 사무 1, 방호 1, 위생 1
자원환경팀	16											15	수연 5	수연 9 수연·환연 1	1						사무 1
양식연구팀	10											8	수연 3	수연 5	2					전기 1	사무 1
연어연구팀	10											4	수연 1	수연 3	6					전기 1	운전 2, 방호 1, 사무 2
자원조성팀	4											3	수연 1	수연 2	1						사무 1
어류연구센터	12	1								행정 1		6	수연 1	수연 5	5					전기 1	운전 1, 방호 1, 사무 2
양식사료연구센터	10	1									행정 1	5	수연 1	수연 4	4					전기 1	운전 1, 방호 1, 사무 1
심해수산자원연구센터	8	1								선박 1		3	수연 1	수연 2	4		통신원 1 기관장 1	선장 1			선원 1
서 해	91	14	1					1	4	5	3	42	12	30	35	4	5	3	4		19
관리과	32	10	수· 수연 1					행·수 1	행정 1 수·지 1 선박 2	행정 1 선박 1 전무 1	선박 1				22	선장 2 기관장 2	선장 2 기관장 1	선원 1 기관원 1	선원 3, 기관원 1		통신, 전기, 운전, 선원, 기관원, 위생, 사무, 방호, 기계
자원환경팀	18											17	수연 4 수연·환연 1	수연 10 수연·환연 2	1						사무 1
양식연구팀	13											11	수연 4	수연 7	2						전기 1, 사무 1
자원조성팀	5											3	수연 1	수연 2	2						사무 2
갑각류연구센터	10	1								행정 1		6	수연 1	수연 5	3						전기 1, 사무 1, 방호 1
갯벌연구센터	13	3								행정 1	선박 1 전무 1	5	수연 1	수연 4	5		선장 1 기관장 1	기관장 1			선원 1, 사무 1

과 별	계	일 반 직										연 구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연구관	연구사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남 해	85	10	1					1	3	4	1		48	12	36	27		2		7	18	
관리과	15	7	수·수연 1					행·수 1	행정 1 수·지 1 선박 1	행정 1 선박 1						8		선장 1		선원 1 통신 1	전기 1, 운전 1, 선원 1, 사무 1, 방호 1	
자원환경팀	16												15	수연 4	수연 9, 수연·환연2	1					사무 1	
양식연구팀	14												12	수연 4	수연 8	2				전기 1	사무 1	
자원조성팀	6												5	수연 1	수연 4	1					사무 1	
패류연구센터	11	1								행정 1			6	수연 1	수연 5	4					전기 1, 사무 1, 운전 2	
어류육종연구센터	11	1									행정 1		5	수연 1	수연 4	5				전기 1	선원 1, 기관 1 운전 1, 사무 1	
해조류연구센터	12	1								행정 1			5	수연 1	수연 4	6		선장 1		선원 1 기관 1 통신 1	기관 1, 사무 1	
제 주	29	4			1			1			2		14	3	11	11	1	1		2	7	
본 소	19	3			수·수연 1			행정 1			전무 1		9	수연 2	수연 7	7	선장 1	기관장1		선원 1	선원 1, 기관 1, 운전 1, 사무 1	
패류육종연구센터	10	1									행정 1		5	수연 1	수연 4	4				전기 1	사무 2, 운전 1	
수산자원관리 조성센터	9	4			행·수· 수연 1			행정 1	행정 1 수산 1				5	수연 2	수연 3							
내수면연구소	32	2						2					17	5	12	13					1	12
내수면생태	16	1						행정 1					9	수연 3	수연 6	6						전기 1, 운전 1, 방호 1, 사무 3
내수면양식	16	1						행정 1					8	수연 2	수연 6	7				전기 1	운전 1, 방호 1, 사무 4	
전문연구소	24	4						1	2	1			15	5	10	5			1	1	3	
양식환경연구소	19	3						선박 1	행정 1	전무 1			12	수연 4	수연 8	4			기관원1	선원 1	사무 1, 선원 1	
고래연구센터	5	1								행정 1			3	수연 1	수연 2	1						사무 1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지 도 직			기 능 직					
		소계	2·3 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지도관	지도사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계	220	121	1		1	4	5	14	47	36	13				99	13	13	23	23	27
본 원	90	79	1		1	3	4	10	31	24	5				11				1	10
관리과	26	19	행정· 수로1		행정1	행정1	행정1 전산1	행정4,전산1, 전무1	행정6,전무1, 수로·전자 통신1						7				운전 1	사무 3, 난방 1, 방호 2
해양과	17	16			수로1		수로1	수로2	수로8	행정1, 수로3					1					사무 1
측량과	23	22			수로1	수로1	기계·전통1 수로2	수로7, 기계·전통1 수로·전산1	수로6,수로· 전자통신1	수로1					1					기계 1
해도과	24	22			수로1	수로1	수로2, 수로·전산1	행·수1,수로5, 수로·기계1 수로·전산1	수로5	수로4					2					통신 1, 기계 1
해양조사사무소	130	42				1	1	4	16	12	8				88	13	13	13	22	17
남 해	94	24			1	1	2	9	6	5					70	9	11	18	19	13
해양과	12	9			행정·수 로1	행정· 수로1		행정2 수로1	행정1, 수로1	행정2					3					사무 1, 운전 1, 기계 1
측량과	82	15					선박1, 수로1	선박2, 수로2, 전무1, 수로·전통1	선박2,수로1, 수로·전자 통신1	선박2, 수로·전 통1					67	선장 5, 기관장 4	선장 6, 기관장 4, 통신장 1	선장 8, 기관원 7, 통신원 3	선원 10, 기관원 7, 통신원 2	선원 8, 기관원 2
서 해	19	9					1	4	3	1					10	2	1	3	1	3
해양과	8	6					행정·수로1	행·수1, 수로1	행정1,수로1	행정1					2					사무 1, 기계 1
측량과	11	3						수로2	수로1						8	선장 1, 기관장 1	기관장 1	선장 2, 기관원 1	통신원 1	선원 1
동 해	17	9					1	3	3	2					8	2	1	2	2	1
해양과	7	6					행정·수로1	행·수1, 수로1	행정1	행정1, 수로1					1					기계원 1
측량과	10	3						수로1	수로2						7	선장 1, 기관장 1	기관장 1	선장 1, 통신원 1	선원 1, 기관원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원

과 별	계	인 반 직											지 도 직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지도관	지도사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계	202	170	1			4	1	19	53	55	37				32				1	31
본 원	40	32	1			3	1	5	11	9	2				8				1	7
총무과	18	12	행정·수산1			행정1		행정 1 전산·별 1	행정 3 전산·별 1	행정 3 수산 1					6				사무1	난방 1, 운전 1, 사무 1, 방호 2
품질검사과	11	10				행정·수산1	수1	수산 1	수산 4	수산 2	수산 1				1					사무1
품질관리과	11	10				수산·수연1		수산 2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2,	수산·수연 ·환연 2 수산 1	수산 1				1					사무1
지 원	162	138				1		14	42	46	35				24					24
인 천	17	15						수산 1	행정 1, 수산 4 수산·수연 ·환연 1	수산 2, 수산·수연· 환연 3	수산 3				2					사무 1, 운전 1
장 황	10	8						수산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행정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수산 2				2					사무 1, 운전 1
여 수	11	9						수산 1	행정 1, 수산 3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수산 2				2					사무 1, 운전 1
목 포	7	6						수산 1	수산 2	행정 1, 수산 1	수산 1				1					사무 1
완 도	7	5						수산 1	수산 1	행정 1, 수산 1	수산 1				2					사무 1, 운전 1
재 주	7	5						수산 1	수산 1	행정 1, 수산 1	수산 1				2					사무 1, 운전 1
부 산	44	40				1		2	11	13	13				4					5
관 리 과	14	11				수산1		행정·수산 1	행정 1, 수산·수연· 환연 2	행정 1, 수산·수연 ·환연 4	수산 1				3					사무 1, 운전 1, 난방 1
품 질 검 사 과	30	29						수산·수연 1	수산 9	행정 1, 수산 6	수산 12				1					사무 1

과 별	계	일 반 직										지 도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지도관	지도사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통 영	15	13						수산 1	행정 1, 수산 2 수산·수연 ·환연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3	수산 4				2						사무 1, 운전 1
포 향	9	8						수산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행정 1, 수산 2	수산 2				1						사무 1
주 문 진	10	8						수산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행정 1, 수산 2	수산 2				2						사무 1, 운전 1
서 울	10	8						수산 1	행정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수산 2	수산 2				2						사무 1, 운전 1
인 천 공 항	9	8						수산 1	수산 2	행정 1, 수산 1, 수산·수연 ·환연 1	수산 2				1						사무 1
평 택	6	5						수산 1	수산 1	행정 1, 수산 2					1						사무 1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정원

과 별	계	인 반 직											지 도 직			기 능 직					
		소계	2·3 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지도관	지도사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524	245				2	2	26	79	72	64				279	38	29	39	35	138	
동 해	450	205				1	1	22	66	63	52				245	33	26	36	29	121	
관리과	11	8				행정·공업 ·수산·선 박·정통 1		행정·수산 1	행정 2, 수산 1	행정 1, 수산 1, 전산 1					3					운전 1, 사무 2	
운용과	9	8						행정·수산· 선박·조선1	수산1, 선박2	수산1, 선박2	수산1				1						사무 1
안전정보과	9	9						전무1	전무3	전무3	전무2										
지도선	421	180					수산·선 박 1	수산·선박 19	수산 8 수산·선박 5 의료 3 선박 22 선박·전무 6 전무 13	수산 12 선박 25 전무 14 선·전무 3	수산 11 선박 23 전무 14 선·전무 1				241	선장 22, 기관장 11	선장 12, 기관장 14	선장 1 선원 16 기관장 1 기관원 18	선원 17 기관원 11 위생원 1	선원 44 기관원 42 위생원 31	
서 해	74	40				1	1	4	13	9	12				34	5	3	3	6	17	
관리과	7	7				행정·공업 ·수산·선 박·정통 1		행·수 1	행·수·선 2	행·수·선 1	행·수· 선 2										
운용과	6	6						행·수·조 ·선 1	선박 1	선박 2	선박 2										
지도선	61	27					수산·선 박 1	수산·선박 2	선박 6 의료 2 전무 2	수산 1 선박 3 전무 2	수산 3 선박 2 전무 3				34	선장 2, 기관장 3	선장 3	기관원 3	선원 3 기관원 2 위생원 1	선원 8 기관원 5 위생원 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소 계	189	1	135	1		1	1	7	1	27	51	28	15	3	53	10	7	9	7	20
부 산 청	146	1	101	1			1	4	1	18	40	21	12	3	44	9	7	8	6	14
총 무 과	18		10	행·공·수·환·선·시·수로·정통·지 1			행·수·선·시 1			행정 1	행정 2	행정 3	행정 1	통신 1	8				사무 1	교환1,남방1,운전1,사무2,방호2
선원해사과	22		19				행·공·수·선 1			행정 2, 행·조·선 1	행정 8	행정 5	행정 2		3				사무 1	사무 2
항만물류과	21		19				행정 1			행정 2, 행정·전무·통신·화공 1, 전산·별 1, 행·수·환 1	행정 2, 화공 1, 전산 2	행정 4, 전산 1	행정 3		2					사무 2
환경안전과	73		43				행·공·수·선·환 1			행·수·환·수로·화공 1, 조선·선박 2, 수로 1, 전무·통신 1	행정 1, 행정·환경 1, 행정·토목 1, 조선·선박 12, 수로 1, 전무 4, 전승 2	행정·환경 1, 조선·선박 5, 수로 1, 전승 1	전무 4, 전무 3		30	통신장 1, 선장 3, 기관장 2, 등대장 3	전기장 1, 기관장 2, 등대장 3	건축원 1, 통신원 1, 기관원 1, 등대원 4	선원 1, 기관원 2, 등대원 1	선원 1, 사무 1
수산물리과	12	8급 1	10				수산·지도 1			행·수·지 1, 수·지 2	수산·지도 2	수산·지도 2	수·지 2		1					사무 1
부산항건설사무소	43		34			1		3		9	11	7	3		9	1	-	1	1	6
계획조사과	15		12			행·공·시 1	행·공·시 1			행정 1, 토목 2	행정 1, 토목 3	행정 1, 토목 1	토목 1		3					운전 1, 사무 2
항만개발과	15		12				행·공·시 1			행정·토목 1, 토목 1, 토목·건축 1	토목 3	토·건·기·전 1	토목 2		3			건축 1		토목 1, 사무 1
항만정비과	13		10				공업·시설 1			토·건·기·전기 3	토·건·기·전 4	토·건·기·전 2			3	건축장 1			기계 1	사무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원

- 315 -

과 별	계	별 정 직	인										기 능 직							
			소계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262		157	1	1	1	9	1	23	62	36	21	2	105	28	26	13	11	27	
인 천 청	164		97	1		1	5	1	13	41	21	12	2	67	13	20	11	4	19	
총 무 과	20		11	행·공·수· 환·선·시· 수로·정통· 지 1		행·수· ·선· 시 1			행정 3	행정 4	행정 1	통신 1		9	-			사무1	난방1,방호2, 운전1,사무4	
선원해사과	10		7				행·공·수· ·선 1		행정 2	행정 3	행정 1			3	-			사무1	사무2	
항만물류과	29		24				행정 1		행정 1 행정·토목 1 행·전무·통신·화 1 행·수·환 1 전산·별 1	행정 4 전산 3 행정·환경 1	행정 3, 행·화 1 행·환 1 행·토 1	행정 2 전산 2		5					사무5	
환경안전과	49		32				행·공·수· ·환·선 1	행·공· ·선· 조선 1	행·수·환·화 1 전무·통신 1	행정·환경·화공 1 조선·선박 9 전무 5,전승 1	행·환·화 1 조선·선박 3 전무 2,전승 1	전무 1 전승 2	전무2	17	선장3 기관장1	통신장1 선장3 기관장5	선장 1 기관원 1		선원1,사무1	
항로표지과	43		11				수로·정통1		수로 1	수로 4, 건축 1	수로 3	수로 1		32	선장2 기관장2 등대장5	선장4 기관장1 등대장6	통신2,전기1 선장1,등대4 기관1	기관원1 등대원1	사무1	
수산관리과	13		12				수산·지도 1			수산·지도 5	수산·지도 3	행정 1 수산·지 2		1						사무1
인천환경건설사무소	44		36	-	1	-	3	-	7	14	8	3		8	1				2	5
계획조사과	14		11		행·공· 시 1		행·공·시 1		행정 1, 토목 2	토목 3	행정 2, 토목 1			3					-	운전1,사무2
항만공사와	16		13				행·공·시 1		토·건·기·전기 2	토·건·기·전기 6	토·건·기·전 기 4			3	건축1				토목1	사무1
항만개발과	14		12				행·공·시 1		토·건·기·전 기 2	토·건·기·전기 5	토·건·기·전 기 1	토·건·기· 전기 3		2	-				기계1	사무1
감문관리소	54		24				1		3	7	7	6		30	14	6	2	5	3	
운 영 과	15		9				행·공 1		행·기·전기 1	행정 1, 기계 1 전기 1	행 1, 기계 1, 전기 1	기·전기 1		6	전기1 기계1	전기장1			-	기계1,사무1, 난방1
기 전 과	33		9						기계·전기 1	기계 1, 전기 1	기계·전기 2	기·전기 4		24	전기5 기계7	전기2 기계3	전기1 기계1	전기3 기계2	-	
보 수 과	6		6						기계·전기 1	기계 1, 전기 1	기계 1 전기 1	기·전기 1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계	251	2	141	1			2	2	10	49	50	25	2	108	19	22	27	17	23	
여수청	185	1	89	1				2	5	32	29	18	2	95	19	21	25	14	16	
총 무 과	14		8	행·공·수·관·선·시·수로·정통·지 1				행정 1		행정 2	행정 3	행정 1		6				사무 1	난방 1 방호 1 윤전 1 사무 2	
선원선박과	12		10					행·수·조·선 1	행정 2 조선·선박 4	행정 2 조선·선박 1				2					사무2	
항 무 과	40		33					행·조·선 1	행정 2, 전산 2 전무 2, 전승 1	행정 2, 전산 2 조선·선박 4 전무 5, 전승 1	행정 1, 전무 7, 전승 1	전무 2		7			통신 4		통신 1 사무 2	
해양환경과	20		7					행·수·환·화 1	행·환·화 2 조선·선박 1 행·환 1	행·환·화 1	행정·토목 1			13	선장 3 기관장1	선장 2 기관장2	선장 2 기관원1		선원 1 사무 1	
항로표지과	81		17					수로 2	수로 3, 건축 1, 선박 1	수로 4, 수로·전승 1	수로 4, 수로·전승 1			64	기계 2 선장 5 기관 4 등대 4	전기1, 등 대4, 기계2, 선장4, 기관장5	통신3, 선 장6, 등대 4, 기관4, 전기 1	건축1, 기관 2, 전기1, 등 대2, 기계3, 선원 3	전기 1 윤전 1 사무 1	
수산관리과	18	7급1	14					수·지 1	수산·지도 8	수산·지도 3	수산·지도 2			3		선장 1		기관 1	사무 1	
여수항건설사무소	22		18					1	2	6	8	1		4				1	1	2
항만공사과	16		13					행·공·시 1	행·토·기·전 기 1	행정 1 토·기·전기 3	행정1 토·기·전기 5	토·기·전기 1		3				토목 1	토목 1	사무 1
어항공사과	6		5						토목 1	토목 2	토목 2			1						사무 1
고흥해양수산사무소	15	8급1	11					행·공·수·선·지 1		수산·지도 4	수산·지도 4	수산·지도 2		3		선장 1			기관 1	사무 1
여천해양수산사무소	8		6					행·수·조·선·지 1	행정 2	행정 1 화공 1	행정 1			2						윤전 1 사무 1
광양해양수산사무소	9		8					행·수·조·선·지 1	행정 1 조선·선박 1	행정 2 수·지 1	행정 1 수·지 1			1						윤전 1
장흥해양수산사무소	12		9					행·수·조·선·지 1	수산·지도 3	행정 1 수산·지도 3	수산·지도 1			3			선장 1	기관 1	사무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계	197	5	124		1		1	2	12	47	37	23	1	68	9	11	11	14	23
마산청	116	1	70		1			2	6	28	20	13		45	6	6	7	12	14
총 무 과	14		8		행·공·수·환·선·시·수로·정통·지 1				행정 1	행정 2	행정 2, 전산 1	행정 1		6	-			사무 1	난방 1 운전 1 사무 2 방호 1
신원선박과	8		7						행·수·조·선 1	행정 2 조선·선박 3	행정 1			1	-				사무 1
항 무 과	22		20						행·조·선 1	행정 4 조선·선박 1 전무·전송 2	행정 1 전무·전송 3 전송 1	행정 1 전무·전송 5 전송 1		2			통신원 1		사무 1
해양환경과	11		6						행·수·환·화 1	행·환·화 2 행·환 1	조선·선박 2			5	선장 1	기관장 1	선장 1	선원 1	사무 1
항만공사과	12		10						토·건·기·전기 1	토·건·기·전기 3	기계 1, 전기 1, 토목 2	토·건·기·전기 2		2				토목 1	사무 1
어항공사과	6		5					시설 1		토목 2	토목 1	토목 1		1					사무 1
항로표지과	29		4						수로 1	수로 1	수로 1	수로 1		25	선장 2 기관장 1 등대장 2	선장 1 기관장 2 등대장 2	통신대 2 통신대 3	건축 1 선원 1 기관 4 등대 3	선원 1
수산관리과	14	8급 1	10					수산·지도 1		수산·지도 5	수산·지도 3	수산·지도 1		3	-	-		-	선원 1 기관 1 사무 1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동영해양수산 사무소	25	1	17				1		2	7	5	2		7	1	2	2	-	2
항만운영과	10		5				행·공· 수·지 선·지 1		행·수·조·선 1	행정 1	행정 1 행·환·화 1			5	선장 1	기관장1	선장 1	-	운전 1 사무 1
수산관리과	15	8급 1	12						수·지 1	수·지 6	수·지 3	수·지 2		2		선장 1	기관원1		
거제해양수산 사무소	17	7급 1	10						행·수·조·선 ·지 1	행정 1 수·지 3	수·지 3	행정 1 수·지 1		6	선장 1	기관장1	선장 1 기관 1	기관원 1	사무 1
사천해양수산 사무소	15	8급 1	10						행·수·조·선 ·지 1	행정 1 수·지 2	행정 1 수·지 2	전무 1 수·지 1	전무 1	4	선장 1	기관장1	-	선원 1	사무 1
남해해양수산 사무소	14		11						행·수·조·선 ·지 1	수산·지도 3	행정 1 수산·지도 3	행정 1 수산·지도 2		3		선장 1	-		기관 1 사무 1
고성해양수산 사무소	10	8급 1	6						행·수·조·선 ·지 1	수산·지도 2	수산·지도 2	수산·지도 1		3					선원 1 기관 1 사무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계	계	별정직	인											기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계	114		71		1			2	6	25	27	10		43	7	8	9	5	14
울산청	106		68		1			2	5	24	26	10		38	6	7	8	5	12
총 무 과	13		8		행·공·수· 환·선·시· 수로·정통· 지 1			행정 1		행정 3	행정 2 전산 1			5				사무 1	난방 1, 윤전 1, 사무 1, 방호 1
선원선박과	11		10					행·수·조· 선 1		행정 2 조선·선박 3	행정 1 조선·선박 2	행정 1		1					사무 1
항 무 과	29		23					행·조·선 1		행정 4 조선·선박 2 전무 1, 전승 1	행정 4, 화공 1 조선·선박 1 전무 2, 전승 1	행정 1 전무·전승 2 전무 2		6			통신 4		통신 1 사무 1
해양환경과	12		7					행·수·환· 화 1		행·환·화 2	행·환·화 1 조선·선박 1	행·환·화·토 2		5	선장 1 기관장 1	선장 1 기관장 1			사무 1
항만공사과	12		9					시설 1		토목 3	전기 1 토목 3	토목 1		3				토목 1	토목 1, 사무 1
항로표지과	21		4					수로 1	수로 1	수로 1 건축 1				17	선장 1 등대 3	선장 1, 기관장 1, 등대장 3	선장 1 등대원 3	통신 1, 기관 1, 등대 1	사무 1
수산관리과	8		7					수산·지도 1	수산·지도 2	행정 1 수산·지도 2	수산·지도 1			1					사무 1
운산해양수 산사무소	8		3					행·수·조· 선·지 1	행정 1	행정 1				5	선장 1	기관장 1	기관원 1		윤전 1, 사무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계	123	1	77				1	1	8	27	27	10	3	45	7	5	11	7	15
동해청	97		61				1	1	5	22	22	7	3	36	6	4	9	5	12
총 무 과	15		9				행·공·수·환·선·시·수로·정통·지 1	행정 1		행정 2	행정 3	행정 1 통신 1		6				사무 1	교환1,난방1 운전1,사무1 방호 1
선원선박과	7		6						행·수·조·선 1	행정 2 조선·선박 2	행정 1			1					사무 1
항 무 과	21		19						행·조·선 1	행정 3 조선·선박 1 전무·전승 1	행정 3, 전산 1 전무 2, 전승 1	전무·전승 3	전무·전승 3	2					통신 1, 사무 1
해양환경과	9		4							행·환·화 1 행·환·화·토 1	행·환·화·토 1 조선·선박 1			5	선장 1 기관장1		선장 1 기관원 1	선원 1	
항만공사과	15		10						토·건·기·전기 1	토·건·기·전기 4	토·건·기·전기 4	토·건·기·전기 1		5			토목 1, 건축 1	토2	사무1
항로표지과	20		4						수로 1	수로 1	수로 1 건축 1			16	등대 4	등대 4	등대 5	등대 1	운전 1, 사무 1
수산관리과	10		9						수산·지도 1	수산·지도 4	수산·지도 3	수산·지도 1		1					사무1
속초해양수산 사무소	16	7급 1	10						행·수·조·선·지 1	행정 1 수·지 2	행정 1 수·지 2	행정 1 수·지 2		5	선장 1	기관 1	선장 1 기관원1		사무1
삼척해양수산 사무소	5		3						행·수·조·선·지 1	수·지 1	행정 1			2				토목 1	사무1
묵호해양수산 사무소	5		3						행·수·조·선·지 1	행정 1	행정 1			2				토목 1	사무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계	142	3	89				1		11	33	30	14	-	50	8	7	11	6	18
군산청	103	1	59				1		7	24	19	8	-	43	8	7	8	6	14
총 무 과	12		7				행·공·수·환 ·선·시·수로 ·정통·지 1		행정 1	행정 2	행정 2 전산 1			5				사무 1	난방1,윤전1, 사무1,방호1
선원선박과	9		8					행·수·조·선 1	행정 2 조선·선박 2	행정 1 조선·선박 1	행정 1			1					사무 1
항 무 과	24		17					행·조·선 1	행정 4 전무·전송 1	행정 2 기계·전기 1 조선·선박 1 전무 2, 전송 2	전무·전송 3			7			통신 1	건축 1 전기 1 기계 1	통신 1 사무 2
해양환경과	11		6					행·수·환·화 1	행·환·화 2 조선·선박 1	행·환·화 1	행·환·화· 토 1			5	선장 1 기관장 1	기관장 1	선장 1		사무 1
항만공사과	18		10					토·건·기·전 기 1	토·건·기·전기 5	토·건·기·전기 2	토·건·기· ·전기 2			8	선장 1 기관장 1	선장 1 기관장 1	토목 1		기계 2 사무 1
항로표지과	20		4					수로 1	수로 1	수로 1 건축 1				16	선장 1 기관장 1 등대 2	선장 1 기관장 1 등대 2	통신 1 선장 2 등대 2	전기 1 등대 1	사무 1
수산관리과	9	8급 1	7					수산·지도 1	수산·지도 4	수산·지도 1	수산·지도 1			1					사무 1
장항해양수산 사무소	4		3					행·수·조·선 ·지 1	행정 1	행정 1				1					사무 1
부안해양수산 사무소	9	8급 1	7					행·수·조·선 ·지 1	수산·지도 2	수산·지도 3	수산·지도 1			1					사무 1
고창해양수산 사무소	8	8급 1	6					행·수·조·선 ·지 1	수산·지도 2	수산·지도 2	수산·지도 1			1					사무 1
위성항법중앙사무소	18		14					수로·통신 1	수로 2 수로·전송·통신 2	행정 1, 수로 2 수로·전송·통신 2	수로 2 수로·전송· 통신 2			4			통신 3		사무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계	234	5	135				2		16	49	45	20	3	94	15	15	19	15	30
목포청	124	1	72				1		8	30	22	11		51	8	7	6	8	22
총 무 과	15		7				행정 1 주무·조사·지		행정 1	행정 2	행정 2 전산 1			8				사무 1	건축 1 난방 1 운전 1 사무 3 방호 1
선원선박과	11		9						행·수·조·선 1	행정 3, 조선·선박 2	행정 2 조선·선박 1			2					사무 2
항 무 과	22		16						행·조·선 1	행정 4 전무·전송 2	행정 1, 조선·선박 1 전무·전송 3	전무·전송 4		6					통신원 2 사무 4
해양환경과	12		6						행·수·환·화 1	행·환·화 1 조선·선박 1	행·환·화 1	행·환·화·토 2		6	선장 1	선장 1 기관장 1	선장 1		사무 2
항만공사과	10		9						토·건·기·전기 1	토·건·기·전 기 3	토·건·기·전 기 3	토·건·기·전 기 2		1					사무 1
어항공사과	7		6						토목 1	토·건·기·전 기 2	토·건·기· 전기 3			1					사무 1
항로표지과	29		5						수로 1	수로 1 건축 1	수로 1	수로 1		24	선장 1 기관장 1 등대장 5	선장 1 등대장 3	통신원 1 선장 1 등대원 3	선원 1 기관원 1 등대원 4	사무 1 등대 1
수산관리과	18	7급 1	14						수산·지도 1	수산·지도 8	수산·지도 3	수산·지도 2		3		선장 1		기관원 1	사무 1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	7	8	9	10
원도해양수산사무소	36	1	28				1		3	8	8	5	3	7	1	2	1		3
항만운영과	9		4				행·공·수·신·자 1		행·수·조·선 1	행정 1	행정 1			5	선장 1	기관장1	선장 1		운전 1 사무 1
수산물관리과	16	8급 1	13						수·지 1	수·지 6	수·지 4	수·지 2		2		선장 1			기관 1
항만정보과	11		11						전무·통신 1	전무 1	전송 1 선박·전무 2	전송 1 선박·전무 2	전무1 선·전무 2						
영광해양수산사무소	9	7급 1	5						행·수·조·선·지 1	수산·지도 2	수산·지도 1	수산·지도 1		3			선장 1	기관 1	사무 1
진도해양수산사무소	12	8급 1	8						행·수·조·선·지 1	수산·지도 3	수산·지도 3	수산·지도 1		3		선장 1		기관원1	사무 1
해남해양수산사무소	14	8급 1	9						행·수·조·선·지 1	수산·지도 3	수산·지도 4	수산·지도 1		4			선장 1	선원 1 기관 1	사무 1
광주해상무선표지소	10		7						수로·통신·전기 1	수로·통신·전송·전기 1	수로·통신·전송·전기 5			3			통신원1		기계 1 사무 1
진도항로표지 종합관리소	29		6						수로 1	수로 2	수로 2	수로 1		23	선장 1 등대장5	선장 1 기관장1 등대장3	선장 1 기관원1 통신원1 등대원6	기관원1 등대원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162	1	96				1		12	33	34	15	1	65	12	10	12	11	20
포 항 청	123	1	66				1		8	23	22	11	1	56	12	10	11	11	12
총 무 과	11		7				행·공·수·환 ·신·시·수로 ·정통·지 1		행정 1	행정 3	행정 1 전산 1			4				사무 1	난방 1 운전 1 사무 1
선원선박과	8		7						행·수·조·선 1	행정 2 조선·선박 2	행정 1 조·선 1			1				-	사무 1
항 무 과	21		18						행·조·선 1	행정 2 전무·전송·전기 1	행정 1, 전기 1, 조선·선박 3, 전무 2, 전송 2	전무·전송· 전기 4	전무· 전송· 전기 1	3				통신원 1	통신 1 사무 1
해양환경과	12		6						행·수·환·화 1	행·환·화 1 조선·선박 1	행·환·화 1	행·환·화·토 2		6	선장 1	기관장 1	선장 1 기관원 1	기관원 1	사무 1
항만공사과	11		8						토목 1	토목 3	토목 2	토목 2		3			토목 1	토목원 1	사무 1
어항공사과	7		6						토목 1	토목 2	토목 2	토목 1		1					사무 1
항로표지과	39		4						수로 1	수로 1 건축 1	수로 1			35	선장 1 기관장 1 등대 9	선장 1 기관장 1 등대 7	통신 1 선장 1 등대 5	기관 1 등대 6	사무 1
수산관리과	14	8급 1	10						수산·지도 1	수산·지도 4	수산·지도 3	수산·지도 2		3			선장 1		사무 1 기관 1
포항신항해양 수산사무소	8		5						행·수·조·선 ·지 1	행정 2	행정 2			3			전기 1		난방 1 사무 1
영덕해양수산사무소	9		8						행·수·조·선 ·지 1	수산·지도 3	수산·지도 2	행정 1 수산·지도 1		1					사무 1
울릉해양수산사무소	5		4						행·수·조·선 ·지 1	수산·지도 1	수산·지도 1	수산·지도 1		1					사무 1
포항해상무선 표지통제소	17		13						수로·통신·전 기 1	행정 1 수로·전송·통신 ·전기 3	수로·전송·통 신·전기 7	수로·전송· 통신·전기 1		4					기계 1 운전 1 사무 2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98		58				1		8	19	19	10	1	40	8	4	8	7	13
제주청	92		53				1		7	17	18	9	1	39	8	4	8	7	12
총 무 과	12		7				행·공·수·환·선·시·수로·정통·지 1		행정 1	행정 2	행정 2 전산 1			5				사무1	난방1,운전1 사무1,밤호1
선원선박과	7		6						행·수·조·선 1	행정 2 조선·선박 1	행정 1 조선·선박 1			1					사무1
항 무 과	18		14						행·조·선 1	행정 1 조선·선박 1 전무·전송 1	행정 3 전무 1 전송 1	전무·전송 4	전무·전송 1	4			통신원1	전기1	통신1,사무1
해양환경과	7		4						행·수·환·화 1		조선·선박1	행·환·화·토 2		3	선장1 기관장1	선장1			-
항만공사과	12		9						토·건·기·전기 1	토·건·기·전기 5	토·건·기·전기 2	토·건·기·전기 1		3					기계1,사무1, 토목1
항로표지과	25		3						수로 1	수로 1	수로 1			22	선장1 기관장1 등대장4	등대장3	통신1,선장2, 등대4	기관2 등대3	사무1
수산관리과	11		10						수산·지도 1	수산·지도 3	행정1 수산·지도 3	수산·지도 2		1					사무1
서귀포해양수산사무소	6		5						행·수·조·선·지 1	행정1 수산·지도 1	전무1	행정1		1					사무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원

과 별	계	별정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46	1	25						5	8	7	5		20	2	2	3	1	12
평택청	46	1	25						5	8	7	5		20	2	2	3	1	12
총 무 과	7		3					행·수·조·선 1	행정 1			행정 1		4					운전 1 난방 1 사무 2
선원선박과	3		2						조선·선박 1	조선·선박 1				1					사무 1
항 무 과	9		8					행·조·선 1	행정 1 조선·선박 1 전무·전송 1	행정 1 전무 1		전무 2		1					사무 1
해양환경과	5													5	선장 1 기관장 1		선장 1 기관원 1		사무 1
항만공사과	8		4					토·건·기·전 1	토·건·기·전 1	토·건·기·전 1	토·건·기·전 1			4				건축 1	기계 1 전기 1 사무 1
항로표지과	6		2					수로 1			수로 1			4		등대장 2	등대 1		사무 1
수산물관리과	8	7급 1	6					수산·지도 1	수산·지도 2	수산·지도 2	수산·지도 1			1					사무 1

해양안전심판원 정원

과 별	계	별 정 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중앙심판 원장1급	지방심판 원장2급	심판관 2급	심판관 4급	소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9급	10급
계	78	17	1	4	4	8	45	1			4	1	10	14	10	5		16	1	15
본 원	23	5	1		4		14	1			1		4	5	3			4	1	3
심판관실	8	4			4		3						행정·선박1	선박1	행정1			1		사무1
조사관실	15	1	1				11	선박1			선박1		행정·선박3	행정1, 행정·선박1, 선박2	행정1, 선박1			3	사무1	사무1, 운전1
지방해양안전 심판원	55	12		4		8	31				3	1	6	9	7	5		12		12
동 해	12	3		1		2	6					1	1	1	2	1		3		3
심판관	4	2				2	2								선박1	행정1				
조사관	8	1		1		4					선박1		선박1	행정1	선박1			3		사무2, 운전1
부 산	16	3		1		2	10				1		2	3	2	2		3		3
심판관	4	2				2	2							선박1		행정1				
조사관	12	1		1		8					선박1		행정·선박1, 선박1	행정1, 선박1	행정·선박1, 선박1	행정1		3		사무2, 운전1
북 포	14	3		1		2	8				1		2	3	1			3		3
심판관	4	2				2	2							선박1		행정1				
조사관	10	1		1		6					선박1		행정·선박1, 선박1	행정1, 선박1	행정·선박1			3		사무2, 운전1
인 천	13	3		1		2	7				1		1	2	2	1		3		3
심판관	4	2				2	2								선박1	행정1				
조사관	9	1		1		5					선박1		선박1	행정1, 선박1	행정1			3		사무2, 운전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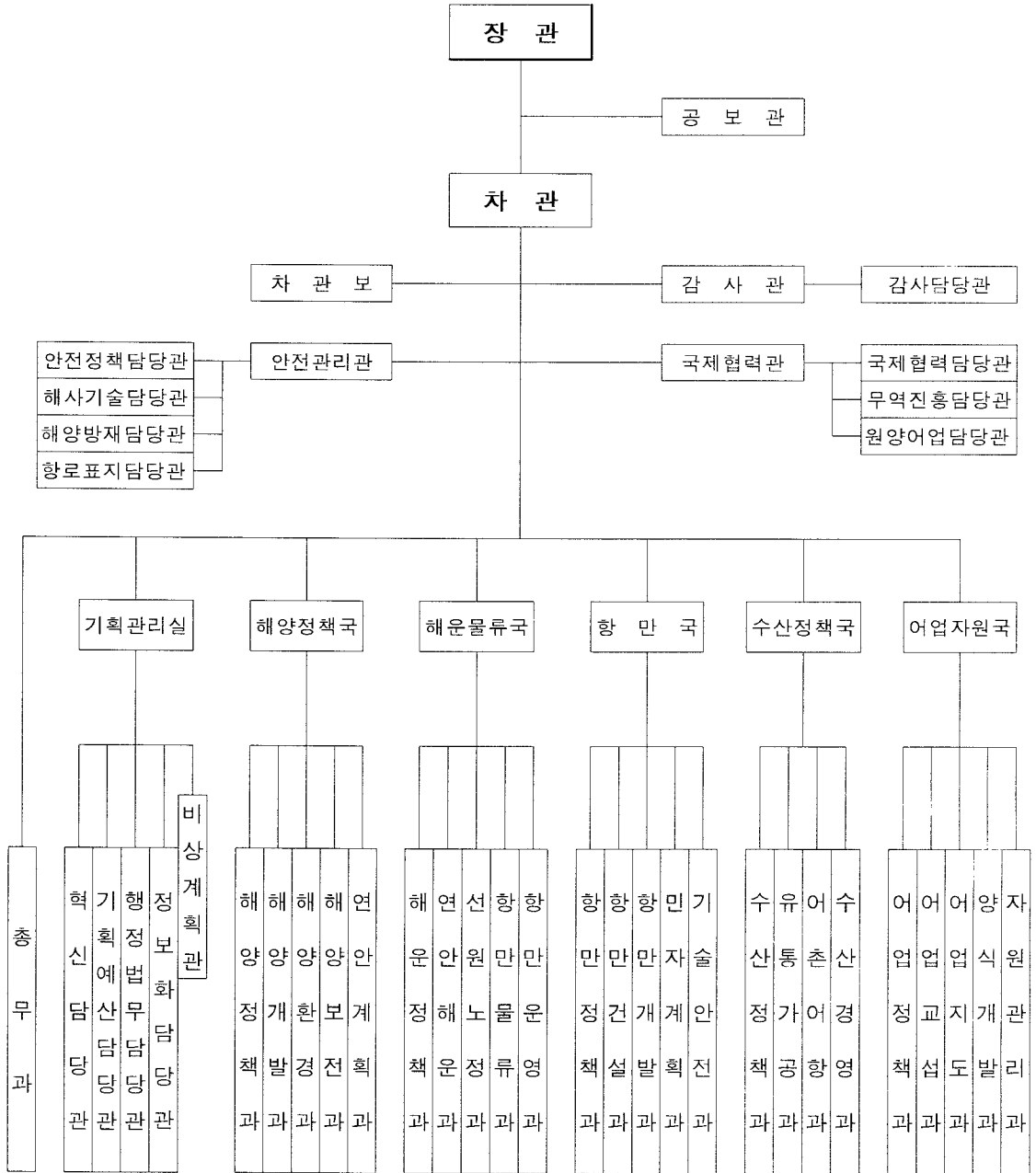
과 별	계	별정직	계약직	인 반 직										기 능 직						
				소계	2·3 급	3급	3·4 급	4급	4·5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95	2	1	58				1		5	24	19	8	1	34	5	6	4	6	13
대산청	81	1	1	48						5	20	16	6	1	31	5	6	4	5	11
총 무 과	13		1	6						행정 1	행정 3	행정 1 전산 1			6					난방1,운 전1,사무3 ,방호1
선원선박과	24			8						행정·수산·선박· 수로 1	행정 1 선박 1 수로 1	행정 1 선박 1 수로 1	수로 1		16	선장1, 기관장1 등대원2	선장1 기관장1 등대원1	전기1,등 대1,선원 1,기관1	통신1 등대2	운전1 사무1
항 무 과	17			15						행정·선박 1	행정 1 행정·화공 1 전무 2, 선박 1	행정 2, 전송 1 선박 1, 전무 2	전무 2	전무1	2					통신1 사무1
해양환경과	8			4							행정·환경 1	행정·환경 1 선박 1	행·토 1		4	선장1	선장1 기관장2			
항만공사과	9			7						토목 1	토목 3 건축 1	토목1	토목 1		2					토목1 사무1
수산관리과	10	8급1		8						수산·지도 1	수산·지도 4	수산·지도 2	수산·지도 1		1					사무1
보령수산기술관리소	14	7급1		10						행·수·지 1		수산·지도 4	수산·지도 3	수산·지도 2	3					선원1 기관1

해양수산부 기구표

여 백

해양수산부 기구표

본 부



소속기관

